

제332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8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5.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96.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7.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98. 공청회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4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 조해진 · 안효대 · 정두언 · 정병국 · 심재철 · 이재오 · 권성동 · 이근현 · 김성태 · 정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 ..... 24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박완주 · 최규성 · 박지원 · 오제세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백재현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 24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김세연 · 안홍준 · 유기준 · 이현승 · 여상규 · 노철래 · 전하진 · 신성범 · 유재중 · 박인숙 · 유일호 · 주영순 · 김종훈 · 윤명희 · 김도읍 · 정의화 · 서용교 · 나성린 · 류지영 · 김정훈 · 김현숙 · 이재균 · 김재경 · 정갑윤 · 이채익 · 이현재 · 고희선 · 이진복 · 김성찬 · 현영희 · 박대출 의원 발의) ..... 2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 · 한명숙 · 장병완 · 김현 · 안민석 · 양승조 · 진성준 · 박지원 · 이윤석 · 홍영표 · 이언주 · 임내현 의원 발의) ..... 24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성 · 김성곤 · 박지원 · 오제세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정세균 · 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 ..... 24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성곤 · 박지원 · 오제세 · 주승용 · 김우남 · 이윤석 · 백재현 · 정세균 · 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 2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안규백 · 강창일 · 김우남 · 박남춘 · 김재윤 · 남인순 · 김진표 · 부좌현 · 신장용 · 이윤석 · 김경협 · 우원식 · 백재현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 ..... 25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배기운 · 유대운 · 도종환 · 최민희 · 김진표 · 김우남 · 박범계 · 장병완 · 김영주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 ..... 25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안홍준 · 한기호 · 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류지영 · 김춘진 · 이명수 · 이에리사 · 황진하 · 김동완 · 한선교 · 김상훈 · 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 ..... 25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최민희 · 김우남 · 최동익 · 김진표 · 신장용 · 임내현 · 김광진 · 노영민 · 이춘석 · 박영선 · 정성호 · 주승용 · 안민석 · 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 ..... 25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안규백 · 진병현 · 안민석 · 주승용 · 이춘석 · 김동철 · 이학영 · 박주선 · 우윤근 · 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 ..... 25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박민수 · 오제세 · 원혜영 · 김영록 · 박기춘 · 홍지만 · 우윤근 · 심재권 · 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 ..... 25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이한성 · 이현재 · 김장실 · 박인숙 · 김성찬 · 이재영 · 강은희 · 이종진 · 강석호 · 경대수 · 이윤석 · 이에리사 · 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 ..... 25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태원 · 강기운 · 나성린 · 김관영 · 이한성 · 주호영 · 민홍철 · 최민희 · 유승우 · 김세연 · 황영철 · 김성찬 · 이종훈 · 김태흠 · 박원석 · 윤영석 · 전정희 의원 발의) ..... 25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서상기 · 강기운 · 이재영 · 이한성 · 이현재 · 이만우 · 윤명희 · 김태원 · 박성호 · 김성곤 · 김영우 의원 발의) ..... 25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 ..... 25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신장용 · 유은혜 · 노웅래 · 유대운 ·



- 배기운·우윤근·이상민·심재권·김우남·유기홍·정성호·최민희·박인숙 의원 발의) ..... 2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유기준·이주영·최경환·주호영·강석호·김태환·안홍준·김성태·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 ..... 25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이종걸·홍종학·서영교·전병헌·김영주·노웅래·유기홍·최민희·유승희·이학영·정청래·민병두·김광진·박범계·진선미·박홍근·김현미·인재근·이미경 의원 발의) ..... 25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전병헌·진성준·박영선·이낙연·신학용·김동철·유성엽·이춘석·유인태·전정희·김광진·안민석·정청래·최동익·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37) ..... 2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민홍철·최민희·박성호·이종진·김형태·김태원·정성호·윤영석·유성엽·김춘진·박인숙·류지영·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 2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민홍철·정성호·주호영·홍문표·주영순·송영근·이종훈·정수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 ..... 2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석현·박영선·이미경·강기정·윤관석·유기홍·노웅래·박홍근·신장용·박범계·장하나·최민희·이원욱·민병두·이종걸·김재윤·서영교·전병헌·문병호·김태년·전해철·김광진 의원 발의) ..... 2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한기호·윤진식·정두언·류지영·정희수·김성태·김태원·서용교·주영순·김성찬·길정우·정성호·김학용·박덕흠·김춘진·하태경·김성곤·김종훈·이종진·심윤조·김재원·전정희·박완주·주호영·김동완·김형태·심학봉·신학용·김태흠·신동우·유승민·이한성·김희선·민홍철·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73) ..... 26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박덕흠·홍의락·민홍철·한명숙·이미경·박지원·최규성·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 ..... 2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김관영·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 ..... 26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 ..... 26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 ..... 26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 26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문병호·유대운·민홍철·안민석·박남춘·배기운·이미경·박민수·김성곤·김장실·김윤덕·김우남·임내현·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27) ..... 26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최민희·박민수·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재윤·유대운·박남춘·이미경·김경협·배재정·장병완·유인태·이석현·노웅래·김윤덕·임내현·김영주 의원 발의) ..... 26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고희선·김정록·유승우·윤진식·이한성·전정희·한기호·박대출·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6) ..... 2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강동원·최동익·도종환·이에리사·이상민·유대운·신경민·김성주·민홍철·김윤덕·노웅래·배기운·김현미·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8) ..... 26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김윤덕·유은혜·김성주·이용섭·

신경민 · 유대운 · 윤호중 · 전정희 · 전병헌 · 배기운 · 홍영표 · 최민희 · 강동원 · 이찬열 · 이낙연 · 박완주 · 장하나 · 우원식 · 오영식 · 김재운 · 김경협 · 김용익 · 유승희 · 김기식 · 박홍근 · 최규성 · 박남춘 · 이춘석 · 정세균 · 임내현 · 박지원 의원 발의) ..... 26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강동원 · 최동익 · 도종환 · 이상민 · 유대운 · 신경민 · 김성주 · 전정희 · 민홍철 · 김윤덕 · 노웅래 · 배기운 · 김현미 · 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6) ..... 2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우 · 박성호 · 서용교 · 황영철 · 현영희 · 서상기 · 김한표 · 이종훈 · 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5) ..... 26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 · 전정희 · 백재현 · 인재근 · 최민희 · 유대운 · 김윤덕 · 송호창 · 도종환 · 이상민 · 민홍철 · 배기운 · 정성호 · 김현미 · 홍종학 · 김관영 · 김춘진 의원 발의) ..... 26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기선 · 강석훈 · 이한성 · 정성호 · 박인숙 · 이완영 · 이노근 · 황진하 · 박민식 · 윤진식 · 민홍철 · 이강후 · 최봉홍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6) ..... 2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김용익 · 김영주 · 배재정 · 김우남 · 배기운 · 최동익 · 이춘석 · 이미경 · 김민기 · 강동원 · 최민희 · 정성호 · 김승남 · 김재운 · 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2) ..... 26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장하나 · 정성호 · 이미경 · 배기운 · 홍종학 · 전병헌 · 문병호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재운 · 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 ..... 2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장하나 · 이에리사 · 정성호 · 유인태 · 홍종학 · 문병호 · 김성주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재운 · 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 ..... 27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전병헌 · 노웅래 · 조정식 · 배재정 · 양승조 · 강기정 · 김영주 · 김동철 · 유인태 의원 발의) ..... 27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심재권 · 이에리사 · 유대운 · 배기운 · 최원식 · 민홍철 · 정성호 · 김승남 · 박민수 · 강동원 · 김장실 · 안홍준 · 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5) ..... 27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6) ..... 27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남춘 · 황주홍 · 김윤덕 · 홍익표 · 김성주 · 홍의락 · 진성준 · 조정식 · 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8) ..... 27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 · 이찬열 · 박혜자 · 민홍철 · 김현 · 신장용 · 이미경 · 배기운 · 부좌현 · 박기춘 · 홍영표 · 강동원 의원 발의) ..... 27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현미 · 윤후덕 · 신경민 · 박수현 · 유은혜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도종환 · 한명숙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 ..... 27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안민석 · 이원욱 · 문병호 · 유대운 · 배기운 · 심재권 · 조정식 · 신경민 · 최원식 · 정성호 · 황주홍 · 홍종학 · 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9) ..... 27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배재정 · 임수경 · 유대운 · 김경협 · 문병호 · 유은혜 · 배기운 · 전정희 · 우윤근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 ..... 27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 27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우윤근 · 김현미 · 정청래 · 신기남 ·

- 전해철·서영교·김성주·최규성·이춘석·유은혜·김광진·신장용·박홍근·배기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7) ..... 27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김한표·신의진·윤명희·정희수·유승우·이재영·김희국·이재오·전하진 의원 발의) ..... 27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정진후·김제남·김재연·이석현·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8) ..... 27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노희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6) ..... 27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조정식·한정애·배재정·임수경·박홍근·배기운·신경민·윤관석·김한길·김광진·서영교·김제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0) ..... 27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윤후덕·金永柱·신경민·유대운·김민기·문희상·한정애·우원식·홍종학·강기정·남인순·인재근·유성엽·김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 ..... 27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박범계·오제세·이윤석·박병석·서영교·홍의락·박수현·박지원·김상희·박기춘·윤관석·주승용·문희상·최동익·박홍근·남인순·김용익·이학영·김영환·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560) ..... 27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송영근·한기호·이종진·심학봉·윤명희·이한성·류지영·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565) ..... 27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재원·김기현·주호영·강은희·이학재·정희수·권은희·김상훈·황영철·이철우·박대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619) ..... 27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강후·권은희·이철우·강석호·한기호·나성린·경대수·신성범·박성호·여상규·강기윤·윤재옥·정갑윤·김기현·박대출·송영근·조원진·김광립·김세연·박덕흠·김진태·박대동·서용교·고희선·김영우·홍일표·정우택·김태흠·金永柱·장윤석·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86) ..... 28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만우·이종훈·김태원·신성범·권성동·이노근·김정록·김기선·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8) ..... 28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현재·이만우·김동완·고희선·전해철·정희수·박인숙·홍문표·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0) ..... 28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상민·박홍근·박완주·김영환·최동익·우윤근·설훈·홍종학·최재성·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0) ..... 28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원식·홍종학·전해철·서영교·이석현·최원식·서기호·김현미·이인영·이춘석·박남춘·노웅래·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4) ..... 2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기윤·이우현·이노근·강길부·서용교·김성태·주영순·최봉홍·이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8) ..... 2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배기운·임수경·조정식·한명숙·백재현·양승조·홍종학·안민석·김춘진·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4) ..... 28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홍의락·서병수·조정식·최원식·전정희·윤관석·우원식·이원욱·한명숙 의원 발의) ..... 28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남인순·정성호·윤관석·홍종학·신장용·박남춘·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3660) ..... 28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정갑윤·이노근·문대성·민병주·이강후·하태경·김동완·최봉홍·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749) ..... 28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김기선·정갑윤·나성린·권은희·

권성동 · 홍지만 · 최봉홍 · 김세연 · 윤관석 · 문정림 · 강기윤 · 홍문표 · 문대성 · 박인숙 · 정몽준 · 강은희 · 류지영 의원 발의)	28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7)	28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윤관석 · 김현미 · 배기운 · 김재윤 · 노웅래 · 박인숙 · 윤호중 · 민홍철 · 심재권 · 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5)	28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김광진 · 윤관석 · 배기운 · 민홍철 · 문병호 · 홍종학 · 전해철 · 이상민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0)	28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박성호 · 이만우 · 함진규 · 정문헌 · 권은희 · 정성호 · 이한성 · 이명수 · 조원진 · 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7)	28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배기운 · 이미경 · 유대운 · 김세연 · 박홍근 · 박남춘 · 최원식 · 박범계 · 강동원 의원 발의)	28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배재정 · 한정애 · 김광진 · 서기호 · 문정림 · 전순옥 · 이낙연 · 조정식 · 이해찬 · 남인순 · 전정희 · 전해철 · 서영교 · 유은혜 · 강동원 · 홍종학 · 김재윤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9)	28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김태년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4)	28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1)	28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이학영 · 이미경 · 최민희 · 박홍근 · 윤관석 · 김재연 · 박민수 · 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4)	29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배기운 · 박민수 · 전순옥 · 신장용 · 심재권 · 윤관석 · 이한성 · 이윤석 · 남인순 · 박혜자 · 최민희 · 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4)	29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배기운 · 김춘진 · 민홍철 · 전순옥 · 남인순 · 이찬열 · 배재정 · 김관영 · 강기정 · 박홍근 · 안규백 · 윤관석 · 유기홍 · 김태년 · 유은혜 · 신경민 · 최규성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493)	29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은수미 · 김재윤 · 김정협 · 임수경 · 장하나 · 홍영표 · 정진후 · 김제남 · 서기호 · 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3)	29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만우 · 이한성 · 송영근 · 심재철 · 이명수 · 박성호 · 한기호 · 김한표 · 조명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7)	29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우윤근 · 김승남 · 이상직 · 안규백 · 장병완 · 박홍근 · 윤관석 · 김동철 · 추미애 · 최원식 · 홍익표 · 이언주 · 조정식 · 임내현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0)	29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 · 유승우 · 김재원 · 이한성 · 김영우 · 이에리사 · 김기선 · 황영철 · 이자스민 · 김세연 · 길정우 · 이이재 의원 발의)	29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윤후덕 · 전병헌 · 윤관석 · 정청래 · 부좌현 · 이찬열 · 최원식 · 김승남 · 김성곤 · 전순옥 · 문병호 의원 발의)	29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홍지만 · 이만우 · 손인춘 · 서상기 · 김장실 · 이자스민 · 윤명희 · 민병주 · 김세연 의원 발의)	29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민홍철 · 이춘석 · 윤관석 · 부좌현 · 배기운 · 오병윤 · 조정식 · 이미경 · 유은혜 · 이상민 · 김성곤 · 박남춘 · 심재권 · 남인순 · 최재성 · 전해철 · 김재윤 · 문병호 · 홍종학 · 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91)	29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헌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 ..... 29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강동원 · 심상정 · 우윤근 · 정진후 · 전순옥 · 전정희 · 서기호 · 남인순 · 박원석 · 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 ..... 29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이장우 · 이이재 · 김태흠 · 이종진 · 함진규 · 윤진식 · 김태원 · 이재영 · 강석호 의원 발의) ..... 29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한명숙 · 이낙연 · 최동익 · 박주선 · 문병호 · 이상규 · 김춘진 · 배기운 · 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6) ..... 29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정몽준 · 이인제 · 김무성 · 남경필 · 정의화 · 이주영 · 송광호 · 김재경 · 고희선 · 강석호 · 김광립 · 이철우 · 유재중 · 김세연 · 홍일표 · 권성동 · 김용태 · 경대수 · 김동완 · 이이재 · 이우현 · 金永柱 · 현영희 의원 발의) ..... 29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이만우 · 심학봉 · 박인숙 · 김태원 · 김기선 · 유승우 · 박성호 · 정갑윤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2) ..... 29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김우남 · 심상정 · 김제남 · 윤관석 · 최동익 · 김광진 · 배기운 · 김성곤 · 유성엽 · 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 ..... 29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 · 김기준 · 김현미 · 민홍철 · 우원식 · 윤관석 · 이상민 · 이윤석 · 이종걸 · 홍종학 의원 발의) ..... 29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 · 정희수 · 박인숙 · 이철우 · 李宰榮 · 김종훈 · 민현주 · 이종훈 · 이이재 · 박성호 의원 발의) ..... 29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서기호 · 은수미 · 심상정 · 강동원 · 박원석 · 전순옥 · 정진후 · 부좌현 · 우윤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6) ..... 30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 · 문정림 · 손인춘 · 한정애 · 박인숙 · 민병주 · 류지영 · 은수미 · 유승희 · 김상희 · 김현숙 · 민현주 · 김태호 · 유일호 · 윤명희 · 이종훈 · 서상기 · 현영희 · 권은희 의원 발의) ..... 30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김무성 · 손인춘 · 유승우 · 문정림 · 유재중 · 이만우 · 이현재 · 이채익 · 신장용 · 이한성 · 류지영 · 주영순 · 한선교 · 최봉홍 · 이철우 · 강석훈 · 김재경 · 이완영 · 박민수 의원 발의) ..... 30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부좌현 · 전순옥 · 한정애 · 박홍근 · 박완주 · 노응래 · 최민희 · 홍종학 · 김기준 · 이학영 의원 발의) ..... 30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정희수 · 현영희 · 김종태 · 유승민 · 이에리사 · 김세연 · 박성호 · 민병주 · 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 ..... 30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5) ..... 30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이목희 · 전순옥 · 부좌현 · 진성준 · 박홍근 · 노영민 · 이인영 · 양승조 · 이원욱 · 인재근 · 이학영 의원 발의) ..... 30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이찬열 · 윤관석 · 윤후덕 · 이상민 · 신경민 · 최원식 · 윤호중 · 박남춘 · 박영선 · 민홍철 · 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863) ..... 30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윤관석 · 박수현 · 이석현 · 김민기 · 이윤석 · 김성곤 · 박지원 · 정세균 · 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 30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유승우 · 이만우 · 이한성 · 박인숙 · 김성찬 · 김태원 · 박성호 · 김기선 · 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8) ..... 30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 · 서영교 · 김윤덕 · 전순옥 · 김관영 · 전정희 · 이춘석 · 김태년 · 박주선 · 이종걸 의원 발의) ..... 30

-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한정애 · 박혜자 · 최동익 · 최원식 · 서영교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이미경 · 김현 · 설훈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324) ..... 30
-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0) ..... 30
-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 31
-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김종태 · 김진태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정 · 류지영 · 문정림 · 신동우 · 이우현 · 이채익 · 조해진 · 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8) ..... 30
-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 · 이우현 · 신동우 · 강은희 · 이현승 · 홍지만 · 김태흠 · 류지영 · 이채익 · 김한표 · 윤상현 · 문정림 · 이완영 · 윤재옥 · 김기선 · 권성동 · 한기호 · 김성태 의원 발의) ..... 30
-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김용익 · 최민희 · 김재윤 · 추미애 · 인재근 · 전순옥 · 노웅래 · 남인순 · 변재일 · 강창일 · 정호준 · 김현미 · 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4) ..... 30
-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상희 · 전순옥 · 유은혜 · 박원석 · 김현미 · 김제남 · 장하나 · 이학영 · 박혜자 의원 발의) ..... 30
-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진성준 · 안규백 · 이상직 · 최민희 · 오영식 · 유승희 · 윤호중 · 전정희 · 박수현 의원 발의) ..... 30
-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이춘석 · 최재천 · 박범계 · 은수미 · 이찬열 · 윤후덕 · 김경협 · 김현미 · 유성엽 · 서영교 의원 발의) ..... 31
-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박수현 · 박영선 · 신경민 · 유인태 · 이춘석 · 조정식 · 진성준 · 최원식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 ..... 31
-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유승우 · 박성효 · 이한성 · 김성찬 · 김기선 · 문정림 · 박성호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8) ..... 31
-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 31
-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 · 송광호 · 홍문표 · 박덕흠 · 이장우 · 이운룡 · 이완구 · 정우택 · 강기윤 · 성완중 · 이명수 · 민병주 · 이인제 · 노철래 · 손인춘 · 김을동 · 이노근 · 윤진식 · 김현숙 · 김동완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8) ..... 31
-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 · 박성효 · 유승우 · 유기준 · 이만우 · 김무성 · 이한성 · 주호영 · 김희국 · 성완중 · 강길부 의원 발의) ..... 31
-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박혜자 · 오영식 · 노영민 · 도종환 · 전해철 · 박남춘 · 김현 · 이춘석 · 박영선 · 김광진 · 진성준 · 홍영표 · 백재현 · 김재윤 · 김민기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7938) ..... 31
-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김태원 · 문정림 · 박성호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한성 · 이주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4) ..... 31
-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김기준 · 박홍근 · 안규백 · 김성곤 · 홍의락 · 김현미 · 정청래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291) ..... 31
-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남인순 · 박범계 · 백근기 · 윤후덕 · 은수미 · 인재근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의원 발의) ..... 31
-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이한성 · 심재철 · 이만우 · 박성호 ·

- 박성효·김태원·정갑윤·김성찬·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 31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진표·민병두·전순옥·김영환·부좌현·배기운·김성곤·홍영표·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4) ..... 31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유인태·김용태·이낙연·이만우·이주영·심재권·전순옥·박민수·신성범 의원 발의) ..... 31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원욱·이학영·한정애·박민수·김윤덕·김춘진·배기운·전순옥·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5) ..... 3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원욱·정청래·이학영·한정애·박민수·안민석·김윤덕·김춘진·배기운·전순옥·문희상·김광진·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93) ..... 31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22) ..... 31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31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미희·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3) ..... 31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강동원·강석호·김광진·김기식·김기준·김동완·김무성·김미희·김상민·김선동·김영주·김영환·남인순·노영민·도종환·문재인·민홍철·배기운·백재현·부좌현·서영교·신장용·원혜영·유은혜·윤관석·윤명희·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주영·이찬열·이학영·이현재·임내현·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호준·최원식·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56) ..... 31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8) ..... 32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홍종학·김재운·박원석·최민희·진선미·이학영·이종걸·문병호·박영선·최재천 의원 발의) ..... 32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효·신동우·김무성·김종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림·문정림·황인자 의원 발의) ..... 32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 32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 32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김정록·이에리사·신경림·이자스민·황인자·송영근·윤명희·김을동·문정림 의원 발의) ..... 32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배재정·배기운·임수경·김성곤·서용교·이목희·장하나·이찬열·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018) ..... 32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노근·김학용·장윤석·성완중·홍문중·박창식·노철래·김을동·박대동·강기운 의원 발의) ..... 32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이목희·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6) ..... 32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윤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헌·안종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099) ..... 32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2) ..... 32

-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우현 · 장윤석 · 이노근 · 박대동 · 박성호 · 성완중 · 전하진 · 이강후 · 이현재 · 박덕흠 · 안덕수 · 주영순 · 박윤옥 · 윤영석 · 최봉홍 · 김태원 · 박성호 · 김상훈 · 권은희 · 홍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2) ..... 32
-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정호준 · 배기운 · 강동원 · 정진후 · 배재정 · 박홍근 · 이학영 · 서영교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0) ..... 32
-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강은희 · 김정록 · 김한표 · 류지영 · 박명재 · 신동우 · 안덕수 · 李宰榮 · 이현재 · 주영순 · 홍문표 · 홍지만 · 황진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93) ..... 32
-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진성준 · 유은혜 · 신계륜 · 이목희 · 최규성 · 설훈 · 홍의락 · 노영민 · 이찬열 · 문병호 · 최원식 · 김현 · 박남춘 · 오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40) ..... 32
-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진성준 · 유은혜 · 신계륜 · 이목희 · 최규성 · 설훈 · 홍의락 · 노영민 · 이찬열 · 문병호 · 최원식 · 김현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7) ..... 32
-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강은희 · 김태흠 · 김한표 · 김희선 · 류지영 · 문정립 · 박대출 · 신동우 · 안덕수 · 윤재옥 · 이완영 · 이우현 · 이진복 · 조명철 · 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288) ..... 32
-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배기운 · 전순옥 · 이윤석 · 박남춘 · 최민희 · 김광진 · 진선미 · 장하나 · 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9356) ..... 32
-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광진 · 김성주 · 노웅래 · 박수현 · 백재현 · 윤후덕 · 이윤석 · 인재근 · 장하나 · 최재천 · 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9403) ..... 32
-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김영주 · 유대운 · 문재인 · 윤호중 · 인재근 · 최원식 · 이상호 · 신학용 · 이찬열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9486) ..... 33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 · 김현 · 변재일 · 박성호 · 이찬열 · 배기운 · 윤후덕 · 김민기 · 윤호중 · 박수현 · 최동익 · 배재정 · 진선미 · 김영주 · 유대운 의원 발의) ..... 33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정문헌 · 박명재 · 황영철 · 안홍준 · 이주영 · 이한성 · 이철우 · 박창식 · 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2) ..... 33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배기운 · 백재현 · 박주선 · 정진후 · 이자스민 · 김상희 · 김태년 · 정성호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9659) ..... 33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안민석 · 이찬열 · 서영교 · 박주선 · 우원식 · 김기준 · 김성곤 · 김광진 · 배재정 · 한정애 · 이언주 · 최민희 · 신경민 의원 발의) ..... 33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민홍철 · 김태년 · 전순옥 · 백재현 · 송호창 · 최동익 · 김경협 · 최원식 · 김재윤 · 이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5) ..... 33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김성곤 · 배기운 · 노영민 · 황주홍 · 박민수 · 김재윤 · 신경민 · 박남춘 · 최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8) ..... 33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김춘진 · 최원식 · 박지원 · 신경민 · 이춘석 · 박영선 · 박수현 · 최재성 · 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863) ..... 33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윤명희 · 김광립 · 이한성 · 서용교 · 류지영 · 박인숙 · 이만우 · 권성동 · 김종태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85) ..... 33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김정록 · 이진복 · 윤영석 · 송영근 · 김기선 · 이명수 · 문대성 · 권성동 · 박인숙 · 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1) ..... 33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부좌현 · 설훈 · 신경민 · 이상직 · 이원옥 · 이학영 · 전해철 · 홍영표 · 황주홍 · 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 ..... 33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배기운 · 전순옥 · 조경태 · 김광진 ·



- 서기호 · 김성곤 · 황주홍 · 부좌현 · 박남춘 · 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5) ..... 33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정갑윤 · 김세연 · 권성동 · 김정록 · 문대성 · 윤명희 · 박명재 · 신동우 · 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0) ..... 33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김춘진 · 신경민 · 박수현 · 김영록 · 박영선 · 박병석 · 윤후덕 · 김현 · 최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0) ..... 33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이노근 · 김성찬 · 이에리사 · 김기선 · 박성호 · 김재원 · 이만우 · 이한성 · 김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2) ..... 33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 · 노철래 · 이현재 · 박윤옥 · 이찬열 · 문대성 · 황인자 · 박명재 · 황영철 · 유승우 · 이우현 · 함진규 · 윤명희 의원 발의) ..... 33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정세균 · 정성호 · 김제남 · 황주홍 · 정진후 · 장병완 · 김동철 · 김영록 · 신기남 · 강기정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62) ..... 33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정희수 · 손인춘 · 이완영 · 이명수 · 김태원 · 박윤옥 · 이만우 · 황영철 · 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63) ..... 33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백재현 · 문희상 · 박남춘 · 진선미 · 김민기 · 최원식 · 조경태 · 이종걸 · 황주홍 · 이원욱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0) ..... 33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정희수 · 손인춘 · 이완영 · 이명수 · 김태원 · 박윤옥 · 이만우 · 황영철 · 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7) ..... 33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권은희 · 김동완 · 김무성 · 김을동 · 류지영 · 박대출 · 박윤옥 · 서청원 · 신경림 · 윤명희 · 이명수 · 이우현 · 이에리사 · 이한성 · 이현승 · 정문헌 · 조해진 · 함진규 · 홍문종 의원 발의) ..... 34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이언주 · 이찬열 · 김영환 · 추미애 · 서영교 · 윤후덕 · 민홍철 · 문희상 · 이상호 · 인재근 · 노영민 · 심재권 · 부좌현 · 김경협 · 백재현 · 오영식 · 정성호 · 신학용 · 강창일 · 정청래 · 홍의락 · 김춘진 · 김동철 · 이미경 · 강동원 · 박민수 · 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9) ..... 34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박남춘 · 양승조 · 김성주 · 안규백 · 김태년 · 이찬열 · 이상민 · 문병호 · 박범계 · 김상희 · 김성곤 · 부좌현 · 남인순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6) ..... 34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이채익 · 김정록 · 김한표 · 정우택 · 정수성 · 홍일표 · 이강후 · 이현재 · 홍지만 의원 발의) ..... 34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박창식 · 이한성 · 윤재옥 · 김태원 · 최봉홍 · 홍지만 · 정희수 · 민현주 · 문대성 · 홍문종 의원 발의) ..... 34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부좌현 · 윤후덕 · 배재정 · 박원석 · 장하나 · 유인태 · 노영민 · 심상정 · 이상직 · 박홍근 · 김성곤 · 신경민 · 송호창 · 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43) ..... 34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노근 · 이채익 · 이우현 · 정두언 · 강석호 · 김상훈 · 강길부 · 유승민 · 윤재옥 · 이강후 의원 발의) ..... 34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원혜영 · 김승남 · 임수경 · 윤후덕 · 진성준 · 박주선 · 이상직 · 유승민 · 김성곤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 ..... 34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강창일 · 박남춘 · 김민기 · 문희상 · 최원식 · 이종걸 · 주승용 · 조경태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40) ..... 34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임수경 · 김용익 · 양승조 · 최동익 · 윤관석 · 최규성 · 홍영표 · 한정애 · 김성주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42) ..... 34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정희수 · 권성동 · 김도읍 · 윤재옥 · 김기선 · 송영근 · 문대성 · 이만우 · 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57) ..... 34

-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이완영 · 김기선 · 김종태 · 이에리사 · 김진태 · 정수성 · 김상훈 · 이진복 의원 발의) ..... 34
-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한기호 · 하태경 · 김기선 · 이자스민 · 이이재 · 송영근 · 양창영 · 김진태 · 이완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69) ..... 34
-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 · 임수경 · 이상직 · 남인순 · 최규성 · 박주선 · 김윤덕 · 전순옥 · 김경협 · 윤후덕 · 부좌현 · 이미경 · 조정식 · 추미애 · 오영식 · 김성곤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 34
-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이현재 · 이만우 · 윤영석 · 조경태 · 서용교 · 김태호 · 신성범 · 권성동 · 문대성 의원 발의) ..... 34
-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광립 · 김동완 · 김무성 · 김한표 · 박덕흠 · 박인숙 · 서상기 · 이우현 · 여상규 · 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84) ..... 34
-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홍문표 · 김영록 · 강기정 · 김경협 · 윤호중 · 최재성 · 이원욱 · 박민수 · 박범계 · 김윤덕 의원 발의) ..... 34
-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박남춘 · 박민수 · 배재정 · 이춘석 · 김광진 · 김민기 · 진성준 · 백재현 · 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07) ..... 34
-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부좌현 · 서영교 · 안민석 · 최동익 · 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0) ..... 34
-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김우남 · 황주홍 · 이상직 · 강창일 · 전순옥 · 주승용 · 김성곤 · 임수경 · 박윤옥 · 이목희 · 박광온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1) ..... 34
-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김동완 · 박수현 · 이노근 · 김성찬 · 문정림 · 이현재 · 박덕흠 · 이인제 · 양승조 의원 발의) ..... 35
-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민 · 문대성 · 정문헌 · 이재영 · 박인숙 · 이자스민 · 민현주 · 황영철 · 하태경 · 강은희 · 유의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54) ..... 35
-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 · 김승남 · 박남춘 · 강창일 · 윤후덕 · 임수경 · 김성주 · 박홍근 · 이개호 · 배재정 의원 발의) ..... 35
-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유은혜 · 황주홍 · 박남춘 · 박민수 · 김성곤 · 김민기 · 이찬열 · 김승남 · 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97) ..... 35
-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김상민 · 김성찬 · 김용태 · 김종태 · 문정림 · 안덕수 · 윤명희 · 이완영 · 이이재 · 이한성 · 이현재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9) ..... 35
-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안민석 · 심재권 · 김현미 · 홍종학 · 오제세 · 최민희 · 박광온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부좌현 · 배재정 · 이개호 · 한명숙 · 최동익 · 서기호 · 추미애 · 도종환 · 유기홍 · 박민수 · 박남춘 · 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33) ..... 35
-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 · 양승조 · 박수현 · 김기식 · 최동익 · 이학영 · 박민수 · 이미경 · 장병완 · 강기정 · 윤호중 · 김상희 의원 발의) ..... 35
-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한명숙 · 도종환 · 심재권 · 김현미 · 박광온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3) ..... 35
-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임수경 · 최민희 · 인재근 · 김성곤 · 주승용 · 김현 · 김제남 · 정청래 · 노웅래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9) ..... 35
-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진선미 · 김광진 · 김현 · 김민기 · 부좌현 · 정성호 · 박남춘 · 주승용 · 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13) ..... 35
-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영환 · 문병호 · 신학용 · 유성엽 · 주승용 · 김성곤 · 이종걸 · 이원욱 · 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2) ..... 35
-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임수경 · 최민희 · 인재근 · 김성곤 · 주승용 · 김현 · 김제남 · 유대운 · 노웅래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71) ..... 35

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부좌현·박남춘·최민희·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05) ..... 35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최민희·부좌현·박남춘·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47) ..... 35
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김현미·강동원·윤관석·진선미·홍익락·전순옥·배재정·최원식·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67) ..... 35
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홍중학·진선미·신정훈·전정희·민병두·김승남·김기식·김윤덕·유은혜·남인순·이학영·우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6) ..... 35
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박주선·정성호·최민희·박민수·김영록·김광진·박남춘·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8) ..... 35
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신경림·조명철·이한성·이만우·이노근·황인자·김장실·이에리사 의원 발의) ..... 35
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손인춘·전하진·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황영철·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명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심윤조·김희선·류성걸·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강길부·이군현·원유철·김광림·이현승·유일호·이만우·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림·윤명희·주영순·함진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종·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림·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37) ..... 35
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전하진·손인춘·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명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김희선·류성걸·심윤조·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이군현·강길부·원유철·이현승·김광림·이만우·유일호·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림·윤명희·함진규·주영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종·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림·하태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신성범·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한기호·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윤영석·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38) ..... 36
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이현재 의원 발의) ..... 36

- 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 · 원혜영 · 김윤덕 · 백재현 · 부좌현 · 진선미 · 김기식 · 최민희 · 김광진 · 전정희 의원 발의) ..... 36
- 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심윤조 · 김을동 · 홍지만 · 정병국 · 서상기 · 안홍준 · 박대출 · 서용교 · 이군현 의원 발의) ..... 36
- 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김현미 · 남인순 · 박남춘 · 박원석 · 정성호 · 정청래 · 유승희 · 원혜영 · 이개호 · 이찬열 · 최동익 · 최민희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26) ..... 36
- 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신정훈 · 임수경 · 이학영 · 김승남 · 박수현 · 정진후 · 윤후덕 · 유대운 · 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95) ..... 36
- 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박명재 · 이종진 · 최봉홍 · 양창영 · 황인자 · 송영근 · 이만우 · 박성호 · 이우현 · 함진규 · 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1) ..... 36
- 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 황영철 · 강석훈 · 정갑윤 · 황진하 · 윤명희 · 박덕흠 · 유승우 · 이윤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 36
- 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정문헌 · 염동열 · 김승남 · 강동원 · 박덕흠 · 한기호 · 장윤석 · 이윤석 · 이철우 · 김춘진 · 이한성 · 김종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94) ..... 36
- 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개호 · 민홍철 · 양승조 · 박남춘 · 김성곤 · 오영식 · 김윤덕 · 이미경 · 최동익 · 노웅래 의원 발의) ..... 37
-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이상직 · 박남춘 · 오영식 · 송호창 · 이개호 · 정청래 · 임수경 · 김광진 · 문희상 · 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18) ..... 37
- 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승남 · 한기호 · 장윤석 · 김춘진 · 박민수 · 김성곤 · 홍영표 · 최동익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22) ..... 37
- 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김성곤 · 박홍근 · 이상직 · 김기준 · 조정식 · 김상희 · 민홍철 · 인재근 · 김관영 의원 발의) ..... 37
- 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이한성 · 권은희 · 정수성 · 정용기 · 박명재 · 서상기 · 신성범 · 박인숙 · 안홍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37) ..... 37
- 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관석 · 안민석 · 이개호 · 김성곤 · 김현 · 민홍철 · 홍영표 · 배재정 · 백재현 · 서영교 · 인재근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77) ..... 37
- 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홍문표 · 이종배 · 김태원 · 이한성 · 이자스민 · 박민수 · 황주홍 · 조원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81) ..... 37
-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노영민 · 배재정 · 한정애 · 이윤석 · 김관영 · 이석현 · 최원식 · 한명숙 · 김민기 의원 발의) ..... 37
-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정진후 · 노회찬 · 김선동 · 오병윤 · 박원석 · 김제남 · 이석기 · 김재연 · 김미희 의원 발의) ..... 37
-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김윤덕 · 김태년 · 김형태 · 문병호 · 박인숙 · 박혜자 · 배기운 · 배재정 · 오제세 · 이상직 · 이재오 · 전병헌 · 전정희 · 진성준 · 최민희 · 홍종학 의원 발의) ..... 37
- 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심상정 · 노회찬 · 박원석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유은혜 · 안민석 · 김용익 의원 발의) ..... 37
- 2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조정식 · 배기운 · 오병윤 · 김영주 · 최재성 · 신장용 · 홍영표 · 김승남 · 은수미 · 문병호 · 박지원 · 원혜영 · 윤호중 · 이인영 · 김현 · 이언주 · 김기준 · 우상호 · 김태흠 · 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7) ..... 37
- 2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언주 · 백재현 · 윤관석 · 우원식 · 이상직 · 김영록 · 문희상 · 문병호 · 김경협 · 유대운 · 인재근 · 최동익 · 노웅래 · 김용익 · 김승남 · 이상민 · 양승조 · 정호준 · 유은혜 · 김기식 · 박홍근 · 유승희 · 배재정 · 도중환 · 김기준 · 신학용 ·

- 윤호중·박민수·홍의락·김영주·정성호·최재성·김재운·최규성·이찬열·김윤덕·김진표·안규백·이인영·정청래·전순옥·김상희·오제세·진성준·박해자·강창일·부좌현·우윤근·김광진·백군기·박범계·김현·원혜영·서영교·안민석·전해철·김한길·김현미·신경민·김춘진·이윤석·김관영·전정희·임내현·민병두·신기남·신장용·박수현·박완주·오영식·조경태·김민기·이우현·김동완·권은희·김한표·이강후·김형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1) ..... 37
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한명숙·배기운·김현미·이학영·이원욱·조정식·김현·김태년·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7) ..... 37
2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민희·신장용·배기운·최원식·이인영·도종환·주승용·이해찬·전순옥·이한성·전해철·강창일·윤관석·남인순·안홍준 의원 발의) ..... 37
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성곤·유성엽·배기운·홍종학·안민석·박홍근·주승용·이학영·최규성 의원 발의) ..... 37
2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전순옥·박홍근·전정희·노웅래·최민희·유성엽·최재천·김승남·홍종학·이학영·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2) ..... 37
2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김광립·심윤조·김태환·강기운·박성호·김장실·이노근·장윤석·이진복·김종태·이주영·윤진식·김태호·민병주·김현숙 의원 발의) ..... 38
2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관영·김현·노웅래·박남춘·박해자·배기운·배재정·설훈·오제세·유성엽·이목희·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 38
2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정세균·신경민·김광진·진성준·한명숙·김춘진·이춘석·이석현·조정식·양승조·김윤덕·이상민·우윤근·배재정·유대운 의원 발의) ..... 38
2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기운·박홍근·김성주·이만우·우윤근·정진후·박수현·김성곤·추미애·유성엽·정호준·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1) ..... 38
2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현재·이채익·조현룡·이종진·김태원·이이재·김기선·김진태·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5) ..... 38
2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기운·강기정·한명숙·오제세·박수현·이언주·장병완·남인순·최동익 의원 발의) ..... 38
2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효대·이우현·장윤석·김학용·김진태·이명수·김기선·강기운·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0) ..... 38
2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정진후·안철수·정성호·유은혜·전순옥·은수미·배재정·윤호중·김민기 의원 발의) ..... 38
2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윤재옥·김기선·윤명희·김성태·이에리사·이만우·서상기·김진태·이운룡 의원 발의) ..... 38
2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이한성·박대출·정희수·김무성·정갑윤·류지영·이진복·이노근·이채익·이에리사 의원 발의) ..... 38
2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신정훈·이종걸·변재일·강창일·최규성·이윤석·김성곤·이춘석·우윤근 의원 발의) ..... 38
2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박명재·이노근·유승민·심학봉·정두언·이우현·나경원·서상기·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01) ..... 38
2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장하나·박민수·김춘진·이종걸·백재현·김영환·주승용·문병호·신학용·김승남·유성엽 의원 발의) ..... 38
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47) ..... 38

- 2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현승 · 강기윤 · 전하진 · 이이재 · 박대출 · 경대수 · 안덕수 · 박창식 · 이장우 의원 발의) ..... 38
- 2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자스민 · 김태환 · 이명수 · 손인춘 · 이운룡 · 김태원 · 이노근 · 송영근 · 이한성 의원 발의) ..... 38
- 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성곤 · 배재정 · 신정훈 · 이개호 · 이학영 · 장하나 · 전해철 · 조정식 · 황주홍 의원 발의) ..... 38
-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우현 · 정우택 · 이한구 · 권성동 · 노철래 · 홍문종 · 김장실 · 이에리사 · 주영순 · 안덕수 · 신동우 · 권은희 · 이한성 · 김기선 · 윤진식 · 윤영석 · 현영희 · 김근태 · 이현재 · 주호영 · 심윤조 · 유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1) ..... 38
-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 정우택 · 유기준 · 이한구 · 김용태 · 심재철 · 황영철 · 조원진 · 홍일표 · 서병수 · 서용교 의원 발의) ..... 38
-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박완주 · 신장용 · 백재현 · 박홍근 · 김우남 · 김춘진 · 김동철 · 이원욱 · 배기운 · 김태년 · 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 ..... 38
-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 · 이현재 · 하태경 · 박인숙 · 정갑윤 · 김정록 · 김태원 · 김을동 · 정수성 · 이현승 · 박민식 · 유기준 의원 발의) ..... 38
-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안민석 · 이원욱 · 문병호 · 유대운 · 배기운 · 심재권 · 조정식 · 신경민 · 최원식 · 정성호 · 황주홍 · 홍종학 · 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0) ..... 39
-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심상정 · 노회찬 · 박원석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안민석 · 김용익 의원 발의) ..... 39
-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황영철 · 강기윤 · 이자스민 · 홍문표 · 김상훈 · 정갑윤 · 여상규 · 박성호 · 김을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0) ..... 39
- 2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조정식 · 배기운 · 오병윤 · 김영주 · 최재성 · 신장용 · 홍영표 · 김승남 · 은수미 · 문병호 · 박지원 · 원혜영 · 윤호중 · 이인영 · 김현 · 이언주 · 김기준 · 우상호 · 김태흠 · 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8) ..... 39
- 2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한명숙 · 배기운 · 김현미 · 이학영 · 이원욱 · 조정식 · 김현 · 김태년 · 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5) ..... 39
- 2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유성엽 · 유승희 · 배기운 · 이원욱 · 전병헌 · 원혜영 · 홍종학 · 전정희 · 문병호 · 최민희 · 조정식 · 이해찬 · 강창일 · 민홍철 · 김광진 · 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1) ..... 39
- 2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경협 · 김관영 · 전병헌 · 박주선 · 윤후덕 · 송광호 · 신장용 · 배기운 · 홍종학 · 최원식 · 유승희 · 강창일 의원 발의) ..... 39
- 2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김광립 · 심윤조 · 김태환 · 강기윤 · 박성호 · 김장실 · 이노근 · 장윤석 · 이진복 · 김종태 · 이주영 · 윤진식 · 김태호 · 민병주 · 김현숙 의원 발의) ..... 39
- 26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이이재 · 이만우 · 이재오 · 이채익 · 강기윤 · 박남춘 · 정희수 · 박덕흠 · 윤재옥 · 김세연 · 정수성 · 황주홍 · 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 ..... 39
-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송영근 · 홍지만 · 최봉홍 · 이운룡 · 김기선 · 한기호 · 정희수 · 박대출 · 문대성 · 전하진 의원 발의) ..... 39
-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홍종학 · 강기정 · 이원욱 · 李宰榮 · 정호준 · 김광진 · 김상희 · 김성주 · 강창일 의원 발의) ..... 39
-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오제세 · 최동익 · 우원식 · 김성주 · 양승조 · 이언주 · 남인순 · 홍종학 · 인재근 의원 발의) ..... 39
-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 · 이자스민 · 장하나 · 김재연 · 김광

진 · 조해진 · 이현재 · 안효대 · 이강후 · 유승민 · 정희수 · 이만우 · 박홍근 · 심윤조 · 이이재 · 김세연 · 주영순 · 정호준 · 장윤석 · 박인숙 · 이주영 · 이장우 · 권은희 · 안종범 · 민현주 · 이종훈 · 류성걸 · 윤명희 · 조명철 · 김상민 · 남경필 · 김기선 · 손인춘 · 김현숙 · 이인제 · 金永柱 · 문정림 · 김영우 · 여상규 · 김명연 · 신경림 · 이재영 · 김광림 · 김진태 · 이에리사 · 민병주 · 박창식 · 김장실 · 신의진 · 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6) ..... 39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 · 배기운 · 원혜영 · 부좌현 · 이언주 · 강창일 · 남인순 · 박완주 · 김정록 · 한명숙 의원 발의) ..... 39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강은희 · 권은희 · 김희선 · 문정림 · 서용교 · 손인춘 · 이노근 · 이우현 · 이현승 · 전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599) ..... 39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김영록 · 김승남 · 박민수 · 오병윤 · 김재연 · 이상규 · 김미희 · 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5) ..... 39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김영록 · 김승남 · 박민수 · 오병윤 · 김재연 · 이상규 · 김미희 · 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4) ..... 39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안효대 · 이우현 · 장윤석 · 김학용 · 김진태 · 이명수 · 김기선 · 강기윤 · 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1) ..... 40

2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윤재옥 · 김기선 · 윤명희 · 김성태 · 이에리사 · 이만우 · 서상기 · 김진태 · 이운룡 의원 발의) ..... 40

2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박수현 · 김광진 · 손인춘 · 송광호 · 노웅래 · 진성준 · 부좌현 · 배기운 · 박혜자 · 박홍근 · 장하나 · 박남춘 · 김경협 · 김태호 · 이언주 · 박민수 · 김세연 의원 발의) ..... 40

2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 · 김현숙 · 이한성 · 류지영 · 안홍준 · 신경림 · 장윤석 · 김무성 · 문대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 ..... 40

2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권은희 · 김동완 · 김무성 · 김을동 · 류지영 · 박대출 · 박윤옥 · 서청원 · 신경림 · 윤명희 · 이명수 · 이우현 · 이에리사 · 이한성 · 이현승 · 정문헌 · 조해진 · 함진규 · 홍문종 의원 발의) ..... 40

2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김정록 · 이노근 · 박인숙 · 조명철 · 이에리사 · 이만우 · 최봉홍 · 황인자 · 신경림 의원 발의) ..... 40

2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정진후 · 김미희 · 김재연 · 송호창 · 이학영 · 전해철 · 박남춘 · 이원욱 · 김윤덕 · 은수미 · 김제남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 ..... 40

2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정진후 · 김미희 · 김재연 · 송호창 · 이학영 · 전해철 · 박남춘 · 이원욱 · 김윤덕 · 은수미 · 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24) ..... 40

2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김상민 · 김성찬 · 김용태 · 김종태 · 문정림 · 안덕수 · 윤명희 · 이완영 · 이이재 · 이한성 · 이현재 · 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8) ..... 40

2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이개호 · 이해찬 · 정청래 · 노웅래 · 홍의락 · 임수경 · 이인영 · 진선미 · 김승남 · 홍종학 의원 발의) ..... 40

2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홍철호 · 정병국 · 송영근 · 김제식 · 심학봉 · 이노근 · 이한성 · 서상기 · 홍지만 의원 발의) ..... 40

2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관석 · 안민석 · 이개호 · 김현 · 민홍철 · 홍영표 · 배재정 · 백재현 · 서영교 · 박민수 의원 발의) ..... 40

2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안홍준 · 이채익 · 정수성 · 여상규 · 김도읍 · 유승우 · 양창영 · 김한표 · 박인숙 · 조원진 의원 발의) ..... 40

29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

29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 40

29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 40

29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  
 295.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  
 296.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  
 297.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64  
 298. 공청회 실시의 건 ..... 64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29건, 정당법 개정안 27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4건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297건이 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 전체를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이병석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안건 상정 관련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만 상정할 수 있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도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291항부터 제297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안건 청원이지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청원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정된 전체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원혜영 의원님 4건, 윤후덕 의원님 2건, 이한성 의원님 1건, 장윤석 의원님 1건, 황영철 의원님 1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조해진·안효대·정두언·정병국·심재철·이재오·권성동·이군현·김성태·정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김세연·안홍준·유기준·이현승·여상규·노철래·전하진·신성범·유재중·박인숙·유일호·주영순·김종훈·윤명희·김도읍·정의화·서용교·나성린·류지영·김정훈·김현숙·이재균·김재경·정갑윤·이채익·이현재·고희선·이진복·김성찬·현영희·박대출 의원 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한명숙·장병완·김현·안민석·양승조·진성준·박지원·이윤석·홍영표·이연주·임내현 의원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강창일·김우남·박남춘·김재윤·남인순·김진표·부좌현·신장용·이윤석·김경협·우원식·백재현·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배기운·유대운·도종환·최민희·김진표·김우남·박범계·장병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홍준·한기호·서용교·주영순·이종훈·류지영·김춘진·이명수·이에리사·황진하·김동완·한선교·김상훈·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최민희·김우남·최동익·김진표·신장용·임내현·김광진·노영민·이춘석·박영선·정성호·주승용·안민석·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안규백·전병헌·안민석·주승용·이춘석·김동철·이학영·박주선·우윤근·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박민수·오제세·원혜영·김영록·박기춘·홍지만·우윤근·심재권·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이현재·김장실·박인숙·김성찬·이재영·강은희·이종진·강석호·경대수·이윤석·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태원·강기윤·나성린·김관영·이한성·주호영·민홍철·최민희·유승우·김세연·황영철·김성찬·이종훈·김태흠·박원석·윤영석·전정희 의원 발의)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서상기·강기윤·이재영·이한성·이현재·이만우·윤명희·김태원·박성호·김성곤·김영우 의원 발의)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배기운·김상희·진성준·오제세·조정식·김현·이석현·민병두·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신장용·유은혜·노웅래·유대운·배기운·우윤근·이상민·심재권·김우남·유기홍·정성호·최민희·박인숙 의원 발의)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유기준·이주영·최경환·주호영·강석호·김태환·안홍준·김성태·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최재천·이종걸·홍종학·서영교·전병헌·김영주·노웅래·유기홍·최민희·유승희·이학영·정청래·민병두·김광진·박범계·진선미·박홍근·김현미·인재근·이미경 의원 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재윤·전병헌·진성준·박영선·이낙연·신학용·김동철·유성엽·이춘석·유인태·전정희·김광진·안민석·정청래·최동익·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37)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한성·민홍철·최민희·박성호·이종진·김형태·김태원·정성호·윤영석·유성엽·김춘진·박인숙·류지영·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민홍철·정성호·주호영·홍문표·주영순·송영근·이종훈·정수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석현·박영선·이미경·강기정·윤관석·유기홍·노웅래·박홍근·신장용·박범계·장하나·최민희·이원욱·민병두·이종걸·김재윤·서영교·전병헌·문병호·김태년·전해철·김광진 의원 발의)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한기호·윤진식·정두연·류지영·정희수·김성태·김태원·서용교·주영순·김성찬·길정우·정성호·김학용·박덕흠·김춘진·하태경·김성곤·김중훈·이종진·심윤조·김재원·전정희·박완주·주호영·김동완·김형태·심학봉·신학용·김대흠·신동우·유승민·이한성·김희선·민홍철·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7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박덕흠·홍의락·민홍철·한명숙·이미경·박지원·최규성·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김관영·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5)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춘석·김성주·김우남·강동원·박원석·전정희·김춘진·우윤근·박인숙·김영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최규성·김현미·이미경·이석현·정성호·인재근·송호창·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88)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민기·이윤석·한명숙·박지원·주승용·우원식·김성곤·임내현·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문병호·유대운·민홍철·안민석·박남춘·배기운·이미경·박민수·김성곤·김장실·김윤덕·김우남·임내현·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27)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최민희·박민수·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재윤·유대운·박남춘·이미경·김경협·배재정·장병완·유인태·이석현·노웅래·김윤덕·임내현·김영주 의원 발의)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고희선·김정록·유승우·윤진식·이한성·전정희·한기호·박대출·김춘진·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6)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강동원·최동익·도종환·이에리사·이상민·유대운·신경민·김성주·민홍철·김윤덕·노웅래·배기운·김현미·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김윤덕·유은혜·김성주·이용섭·신경민·유대운·윤호중·전정희·전병헌·배기운·홍영표·최민희·강동원·이찬열·이낙연·박완주·장하나·우원식·오영식·김재윤·김경협·김용익·유승희·김기식·박홍근·최규성·박남춘·이춘석·정세균·임내현·박지원 의원 발의)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강동원·최동익·도종환·이상민·유대운·신경민·김성주·전정희·민홍철·김윤덕·노웅래·배기운·김현미·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6)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우·박성호·서용교·황영철·현영희·서상기·김한표·이종훈·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5)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전정희·백재현·인재근·최민희·유대운·김윤덕·송호창·도종환·이상민·민홍철·배기운·정성호·김현미·홍종학·김관영·김춘진 의원 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기선·강석훈·이한성·정성호·박인숙·이완영·이노근·황진하·박민식·윤진식·민홍철·이강후·최봉홍·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6)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이춘석·이미경·김민기·강동원·최민희·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2)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정성호·이미경·배기운·홍종학·전병헌·문병호·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최민희·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이에리사·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강동원·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전병헌·노용래·조정식·배재정·양승조·강기정·김영주·김동철·유인태 의원 발의)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심재권·이에리사·유대운·배기운·최원식·민홍철·정성호·김승남·박민수·강동원·김장실·안홍준·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5)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6)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황주홍·김윤덕·홍익표·김성주·홍의락·진성준·조정식·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8)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이찬열·박혜자·민홍철·김현·신장용·이미경·배기운·부좌현·박기춘·홍영표·강동원 의원 발의)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현미·윤후덕·신경민·박수현·유은혜·진선미·우원식·이목희·도종환·한명숙·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0)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안민석·이원욱·문병호·유대운·배기운·심재권·조정식·신경민·최원식·정성호·황주홍·홍종학·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9)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배재정·임수경·유대운·김경협·문병호·유은혜·배기운·전정희·우윤근·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김제남·박홍근·박원석·유성엽·심상정·서기호·노회찬·강동원·이목희·홍영표 의원 발의)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윤근·김현미·정청래·신기남·전해철·서영교·김성주·최규성·이춘석·유은혜·김광진·신장용·박홍근·배기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7)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고희선·김한표·신의진·윤명희·정희수·유승우·이재영·김희국·이재오·전하진 의원 발의)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정진후·김제남·김재연·이석현·金永柱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8)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노회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6)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조정식·한정애·배재정·임수경·박홍근·배기운·신경민·윤관석·김한길·김광진·서영교·김제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0)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윤후덕·金永柱·신경민·유대운·김민기·문희상·한정애·우원식·홍종학·강기정·남인순·인재근·유성엽·김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박범계·오제세·이윤석·박병석·서영교·홍의락·박수현·박지원·김상희·박기춘·윤관석·주승용·문희상·최동익·박홍근·남인순·김용익·이학영·김영환·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560)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송영근·한기호·이종진·심학봉·윤명희·이한성·류지영·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565)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재원·김기현·주호영·강은희·이학재·정희수·권은희·김상훈·황영철·이철우·박대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619)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강후·권은희·이철우·강석호·한기호·나성린·경대수·신성범·박성효·여상규·강기윤·윤재옥·정갑윤·김기현·박대출·송영근·조원진·김광림·김세연·박덕흠·김진태·박대동·서용교·고희선·김영우·홍일표·정우택·김태흠·金永柱·장윤석·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2986)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만우·이종훈·김태원·신성범·권성동·이노근·김정록·김기선·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18)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현재·이만우·김동완·고희선·전해철·정희수·박인숙·홍문표·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0)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이상민·박홍근·박완주·김영환·최동익·우윤근·설훈·홍종학·최재성·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3190)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우원식·홍종학·전해철·서영교·이석현·최원식·서기호·김현미·이인영·이춘석·박남춘·노웅래·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4)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기윤·이우현·이노근·강길부·서용교·김성태·주영순·최봉홍·이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8)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배기운·임수경·조정식·한명숙·백재현·양승조·홍종학·안민석·김춘진·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644)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홍의락·서병수·조정식·최원식·전정희·윤관석·우원식·이원욱·한명숙 의원 발의)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배기운·김우남·남인순·정성호·윤관석·홍종학·신장용·박남춘·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3660)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정갑윤·이노근·문대성·민병주·이강후·하태경·김동완·최봉홍·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749)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金永柱·김기선·정갑윤·나성린·권은희·권성동·홍지만·최봉홍·김세연·윤관석·문정림·강기윤·홍문표·문대성·박인숙·정몽준·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이찬열·최원식·배기운·문병호·이윤석·김승남·윤호중·민홍철·이해찬·김광진·강동원·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87)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윤관석·김현미·배기운·김재운·노웅래·박인숙·윤호중·민홍철·심재권·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5)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김광진·윤관석·배기운·민홍철·문병호·홍종학·전해철·이상민·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0)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박성호·이만우·함진규·정문헌·권은희·정성호·이한성·이명수·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7)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배기운·이미경·유대운·김세연·박홍근·박남춘·최원식·박범계·강동원 의원 발의)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배재정·한정애·김광진·서기호·문정림·전순옥·이낙연·조정식·이해찬·남인순·전정희·전해철·서영교·유은혜·강동원·홍종학·김재운·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9)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유은혜·신경민·최규성·김태년·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4)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김태년·유은혜·신경민·최규성·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1)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이학영·이미경·최민희·박홍근·윤관석·김재연·박민수·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4)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배기운·박민수·전순옥·신장용·심재권·윤관석·이한성·이윤석·남인순·박혜자·최민희·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4)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배기운·김춘진·민홍철·전순옥·남인순·이찬열·배재정·김관영·강기정·박홍근·안규백·윤관석·유기홍·김태년·유은혜·신경민·최규성·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4493)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은수미·김재윤·김경협·임수경·장하나·홍영표·정진후·김제남·서기호·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3)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만우·이한성·송영근·심재철·이명수·박성호·한기호·김한표·조명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7)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우윤근·김승남·이상직·안규백·장병완·박홍근·윤관석·김동철·추미애·최원식·홍익표·이연주·조정식·임내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30)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정문헌·유승우·김재원·이한성·김영우·이에리사·김기선·황영철·이자스민·김세연·길정우·이이재 의원 발의)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윤후덕·전병헌·윤관석·정청래·부좌현·이찬열·최원식·김승남·김성곤·전순옥·문병호 의원 발의)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홍지만·이만우·손인춘·서상기·김장실·이자스민·윤명희·민병주·김세연 의원 발의)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민홍철·이춘석·윤관석·부좌현·배기운·오병윤·조정식·이미경·유은혜·이상민·김성곤·박남춘·심재권·남인순·최재성·전해철·김재윤·문병호·홍종학·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91)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성곤·배기운·전병헌·문병호·민홍철·이미경·백재현·인재근·김윤덕·유기홍·조정식·강동원·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3)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강동원·심상정·우윤근·정진후·전순옥·전정희·서기호·남인순·박원석·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장우·이이재·김태흠·이종진·함진규·윤진식·김태원·이재영·강석호 의원 발의)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한명숙·이낙연·최동익·박주선·문병호·이상규·김춘진·배기운·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6)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정몽준·이인제·김무성·남경필·정의화·이주영·송광호·김재경·고희선·강석호·김광림·이철우·유재중·김세연·홍일표·권성동·김용태·경대수·김동완·이이재·이우현·金永柱·현영희 의원 발의)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만우·심학봉·박인숙·김태원·김기선·유승우·박성호·정갑윤·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2)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김우남·심상정·김제남·윤관석·최동익·김광진·배기운·김성곤·유성엽·정진후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문병호·김기준·김현미·민홍철·우원식·윤관석·이상민·이윤석·이종걸·홍종학 의원 발의)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김동완·정희수·박인숙·이철우·李宰榮·김종훈·민현주·이종훈·이이재·박성호 의원 발의)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서기호·은수미·심상정·강동원·박원석·전순옥·정진후·부좌현·우윤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6)
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문정림·손인춘·한정애·박인숙·민병주·류지영·은수미·유승희·김상희·김현숙·민현주·김태호·유일호·윤명희·이종훈·서상기·현영희·권은희 의원 발의)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김무성·손인춘·유승우·문정림·유재중·이만우·이현재·이채익·신장용·이한성·류지영·주영순·한선교·최봉홍·이철우·강석훈·김재경·이완영·박민수 의원 발의)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부좌현·전순옥·한정애·박홍근·박완주·노용래·최민희·홍중학·김기준·이학영 의원 발의)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희수·현영희·김종태·유승민·이에리사·김세연·박성호·민병주·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김성곤·김용익·김현미·유은혜·이낙연·이상직·이해찬·정성호·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5)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이목희·전순옥·부좌현·진성준·박홍근·노영민·이인영·양승조·이원욱·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이찬열·윤관석·윤후덕·이상민·신경민·최원식·윤호중·박남춘·박영선·민홍철·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863)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윤관석·박수현·이석현·김민기·이윤석·김성곤·박지원·정세균·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유승우·이만우·이한성·박인숙·김성찬·김태원·박성호·김기선·신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8)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김현·서영교·김윤덕·전순옥·김관영·전정희·이춘석·김태년·박주선·이종걸 의원 발의)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한정애·박혜자·최동익·최원식·서영교·임수경·장하나·전순옥·이미경·김현·설훈·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324)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유성엽·김우남·우원식·김승남·윤호중·김기준·김재연·민홍철·유은혜·진성준·송호창·정호준·추미애·박남춘·박홍근·박민수·장하나·최동익·우윤근·윤후덕·전순옥·남인순·김태년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0)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재원·유승우·정수성·이강후·안홍준·류지영·송영근·김정록·문정림 의원 발의)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종태·김진태·김학용·김한표·김희정·류지영·문정림·신동우·이우현·이채익·조해진·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8)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이우현·신동우·강은희·이현승·홍지만·김태흠·류지영·이채익·김한표·윤상현·문정림·이완영·윤재옥·김기선·권성동·한기호·김성태 의원 발의)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용익·최민희·김재운·추미애·인재근·전순옥·노용래·남인순·변재일·강창일·정호준·김현미·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4)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상희·전순옥·유은혜·박원석·김현미·김제남·장하나·이학영·박혜자 의원 발의)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진성준·안규백·이상직·최민희·오영식·유승희·윤호중·전정희·박수현 의원 발의)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 이춘석 · 최재천 · 박범계 · 은수미 · 이찬열 · 윤후덕 · 김경협 · 김현미 · 유성엽 · 서영교 의원 발의)
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 · 박수현 · 박영선 · 신경민 · 유인태 · 이춘석 · 조정식 · 진성준 · 최원식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
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유승우 · 박성호 · 이한성 · 김성찬 · 김기선 · 문정림 · 박성호 · 김태원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8)
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송광호 · 홍문표 · 박덕흠 · 이장우 · 이운룡 · 이완구 · 정우택 · 강기윤 · 성완중 · 이명수 · 민병주 · 이인제 · 노철래 · 손인춘 · 김을동 · 이노근 · 윤진식 · 김현숙 · 김동완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8)
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 · 박성호 · 유승우 · 유기준 · 이만우 · 김무성 · 이한성 · 주호영 · 김희국 · 성완중 · 강길부 의원 발의)
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박혜자 · 오영식 · 노영민 · 도종환 · 전해철 · 박남춘 · 김현 · 이춘석 · 박영선 · 김광진 · 진성준 · 홍영표 · 백재현 · 김재윤 · 김민기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7938)
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김태원 · 문정림 · 박성호 · 이낙연 · 이노근 · 이만우 · 이한성 · 이주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4)
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김기준 · 박홍근 · 안규백 · 김성곤 · 홍의락 · 김현미 · 정청래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8291)
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남인순 · 박범계 · 백군기 · 윤후덕 · 은수미 · 인재근 · 정청래 ·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의원 발의)
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이한성 · 심재철 · 이만우 · 박성호 · 박성호 · 김태원 · 정갑윤 · 김성찬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김진표 · 민병두 · 전순옥 · 김영환 · 부좌현 · 배기운 · 김성곤 · 홍영표 · 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4)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유인태 · 김용태 · 이낙연 · 이만우 · 이주영 · 심재권 · 전순옥 · 박민수 · 신성범 의원 발의)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이원욱 · 이학영 · 한정애 · 박민수 · 김윤덕 · 김춘진 · 배기운 · 전순옥 · 문희상 · 김광진 · 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75)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이원욱 · 정청래 · 이학영 · 한정애 · 박민수 · 안민석 · 김윤덕 · 김춘진 · 배기운 · 전순옥 · 문희상 · 김광진 · 은수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93)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주영 · 민현주 · 박인숙 · 송영근 · 정갑윤 · 서용교 · 민병주 · 이운룡 · 이이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22)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장하나 · 강동원 · 김제남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남인순 · 박주선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김미희 · 김승남 · 박민수 · 오병윤 · 김재연 · 이상규 · 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3)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강동원 · 강석호 · 김광진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완 · 김무성 · 김미희 · 김상민 · 김선동 · 김영주 · 김영환 · 남인순 · 노영민 · 도종환 · 문재인 · 민홍철 · 배기운 · 백재현 · 부좌현 · 서영교 · 신장용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명희 · 윤호중 · 은수미 · 이낙연 · 이상민 · 이상직 · 이석현 · 이주영 · 이찬열 · 이학영 · 이현재 · 임내현 · 장하나 · 전순옥 · 전해철 · 정호준 · 최원식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8756)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8)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홍중학·김재윤·박원석·최민희·진선미·이학영·이종걸·문병호·박영선·최재천 의원 발의)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효·신동우·김무성·김중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립·문정립·황인자 의원 발의)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97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김정록·이에리사·신경립·이자스민·황인자·송영근·윤명희·김을동·문정립 의원 발의)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배재정·배기운·임수경·김성곤·서용교·이목희·장하나·이찬열·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018)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노근·김학용·장윤석·성완중·홍문중·박창식·노철래·김을동·박대동·강기운 의원 발의)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이목희·홍중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056)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윤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헌·안중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099)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9122)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박성호·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윤영석·최봉홍·김태원·박성효·김상훈·권은희·홍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2)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배재정·박홍근·이학영·서영교·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0)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은희·김정록·김한표·류지영·박명재·신동우·안덕수·李宰榮·이현재·주영순·홍문표·홍지만·황진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93)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진성준·유은혜·신계륜·이목희·최규성·설훈·홍의락·노영민·이찬열·문병호·최원식·김현·박남춘·오영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240)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진성준·유은혜·신계륜·이목희·최규성·설훈·홍의락·노영민·이찬열·문병호·최원식·김현·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7)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은희·김태흠·김한표·김희선·류지영·문정립·박대출·신동우·안덕수·윤재옥·이완영·이우현·이진복·조명철·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28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배기운·전순옥·이윤석·박남춘·최민희·김광진·진선미·장하나·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9356)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광진·김성주·노웅래·박수현·백재현·윤후덕·이윤석·인재근·장하나·최재천·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9403)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주·유대운·문재인·윤호중·인재근·최원식·우상호·신학용·이찬열·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9486)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김현·변재일·박성효·이찬열·배기운·윤후덕·김민기·윤호중·박수현·최동익·배재정·진선미·김영주·유대운 의원 발의)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정문헌·박명재·황영철·안홍준·이주영·이한성·이철우·박창식·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2)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백재현·박주선·정진후·이자스민·김상희·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9659)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안민석·이찬열·서영교·박주선·우원식·김기준·김성곤·김광진·배재정·한정애·이연주·최민희·신경민 의원 발의)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민홍철·김태년·전순옥·백재현·송호창·최동익·김경협·최원식·김재윤·이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5)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김성곤·배기운·노영민·황주홍·박민수·김재윤·신경민·박남춘·최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848)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춘진·최원식·박지원·신경민·이춘석·박영선·박수현·최재성·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863)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윤명희·김광립·이한성·서용교·류지영·박인숙·이만우·권성동·김종태·이에리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85)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김정록·이진복·윤영석·송영근·김기선·이명수·문대성·권성동·박인숙·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1)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부좌현·설훈·신경민·이상직·이원욱·이학영·전해철·홍영표·황주홍·강기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배기운·전순옥·조경태·김광진·서기호·김성곤·황주홍·부좌현·박남춘·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5)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정갑윤·김세연·권성동·김정록·문대성·윤명희·박명재·신동우·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40)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춘진·신경민·박수현·김영록·박영선·박병석·윤후덕·김현·최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0)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이노근·김성찬·이에리사·김기선·박성호·김재원·이만우·이한성·김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2)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노철래·이현재·박윤옥·이찬열·문대성·황인자·박명재·황영철·유승우·이우현·함진규·윤명희 의원 발의)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정세균·정성호·김제남·황주홍·정진후·장병완·김동철·김영록·신기남·강기정·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62)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정희수·손인춘·이완영·이명수·김태원·박윤옥·이만우·황영철·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63)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백재현·문희상·박남춘·진선미·김민기·최원식·조경태·이종걸·황주홍·이원욱·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0)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정희수·손인춘·이완영·이명수·김태원·박윤옥·이만우·황영철·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77)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권은희 · 김동완 · 김무성 · 김을동 · 류지영 · 박대출 · 박윤옥 · 서청원 · 신경림 · 윤명희 · 이명수 · 이우현 · 이에리사 · 이한성 · 이현승 · 정문헌 · 조해진 · 함진규 · 홍문중 의원 발의)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이언주 · 이찬열 · 김영환 · 추미애 · 서영교 · 윤후덕 · 민홍철 · 문희상 · 우상호 · 인재근 · 노영민 · 심재권 · 부좌현 · 김경협 · 백재현 · 오영식 · 정성호 · 신학용 · 강창일 · 정청래 · 홍의락 · 김춘진 · 김동철 · 이미경 · 강동원 · 박민수 · 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49)
-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박남춘 · 양승조 · 김성주 · 안규백 · 김태년 · 이찬열 · 이상민 · 문병호 · 박범계 · 김상희 · 김성곤 · 부좌현 · 남인순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6)
-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 · 이채익 · 김정록 · 김한표 · 정우택 · 정수성 · 홍일표 · 이강후 · 이현재 · 홍지만 의원 발의)
-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박창식 · 이한성 · 윤재옥 · 김태원 · 최봉홍 · 홍지만 · 정희수 · 민현주 · 문대성 · 홍문중 의원 발의)
-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부좌현 · 윤후덕 · 배재정 · 박원석 · 장하나 · 유인태 · 노영민 · 심상정 · 이상직 · 박홍근 · 김성곤 · 신경민 · 송호창 · 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43)
-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노근 · 이채익 · 이우현 · 정두언 · 강석호 · 김상훈 · 강길부 · 유승민 · 윤재옥 · 이강후 의원 발의)
-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원혜영 · 김승남 · 임수경 · 윤후덕 · 진성준 · 박주선 · 이상직 · 유승민 · 김성곤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
-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강창일 · 박남춘 · 김민기 · 문희상 · 최원식 · 이종걸 · 주승용 · 조경태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40)
-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

- 표발의)(이목희 · 임수경 · 김용익 · 양승조 · 최동익 · 윤관석 · 최규성 · 홍영표 · 한정애 · 김성주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42)
-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정희수 · 권성동 · 김도읍 · 윤재옥 · 김기선 · 송영근 · 문대성 · 이만우 · 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57)
-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이완영 · 김기선 · 김종태 · 이에리사 · 김진태 · 정수성 · 김상훈 · 이진복 의원 발의)
-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한기호 · 하태경 · 김기선 · 이자스민 · 이이재 · 송영근 · 양창영 · 김진태 · 이완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69)
-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 · 임수경 · 이상직 · 남인순 · 최규성 · 박주선 · 김윤덕 · 전순옥 · 김경협 · 윤후덕 · 부좌현 · 이미경 · 조정식 · 추미애 · 오영식 · 김성곤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이현재 · 이만우 · 윤영석 · 조정태 · 서영교 · 김태호 · 신성범 · 권성동 · 문대성 의원 발의)
-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김광립 · 김동완 · 김무성 · 김한표 · 박덕흠 · 박인숙 · 서상기 · 이우현 · 여상규 · 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84)
-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홍문표 · 김영록 · 강기정 · 김경협 · 윤호중 · 최재성 · 이원욱 · 박민수 · 박범계 · 김윤덕 의원 발의)
-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박남춘 · 박민수 · 배재정 · 이춘석 · 김광진 · 김민기 · 진성준 · 백재현 · 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07)
-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부좌현 · 서영교 · 안민석 · 최동익 · 최민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0)
-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김우남 · 황주홍 · 이상직 · 강창일 · 전순옥 · 주승용 · 김성곤 · 임수경 · 박윤옥 · 이목희 · 박광온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21)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동완·박수현·이노근·김성찬·문정립·이현재·박덕흠·이인제·양승조 의원 발의)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민·문대성·정문현·이재영·박인숙·이자스민·민현주·황영철·하태경·강은희·유의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54)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박수현·김승남·박남춘·강창일·윤후덕·임수경·김성주·박홍근·이개호·배재정 의원 발의)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유은혜·황주홍·박남춘·박민수·김성곤·김민기·이찬열·김승남·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97)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상민·김성찬·김용태·김종태·문정립·안덕수·윤명희·이완영·이이재·이한성·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9)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안민석·심재권·김현미·홍종학·오제세·최민희·박광온·김성곤·이찬열·이종걸·부좌현·배재정·이개호·한명숙·최동익·서기호·추미애·도종환·유기홍·박민수·박남춘·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33)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양승조·박수현·김기식·최동익·이학영·박민수·이미경·장병완·강기정·윤호중·김상희 의원 발의)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한명숙·도종환·심재권·김현미·박광온·김성곤·이찬열·이종걸·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3)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임수경·최민희·인재근·김성곤·주승용·김현·김제남·정청래·노웅래·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99)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13)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영환·문병호·신학용·유성엽·주승용·김성곤·이종걸·이원욱·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2)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임수경·최민희·인재근·김성곤·주승용·김현·김제남·유대운·노웅래·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71)
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부좌현·박남춘·최민희·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05)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최민희·부좌현·박남춘·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47)
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김현미·강동원·윤관석·진선미·홍의락·전순옥·배재정·최원식·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67)
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홍종학·진선미·신정훈·전정희·민병두·김승남·김기식·김윤덕·유은혜·남인순·이학영·우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6)
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박주선·정성호·최민희·박민수·김영록·김광진·박남춘·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8)
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신경립·조명철·이한성·이만우·이노근·황인자·김장실·이에리사 의원 발의)
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손인춘·전하진·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황영철·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맹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

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심윤조·김희선·류성걸·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강길부·이근현·원유철·김광립·이현승·유일호·이만우·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립·윤명희·주영순·함진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중·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윤영석·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37)

**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전하진·손인춘·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맹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김희선·류성걸·심윤조·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이근현·강길부·원유철·이현승·김광립·이만우·유일호·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립·윤명희·함진규·주영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중·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

경림·하태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신성범·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한기호·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윤영석·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38)

**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이현재 의원 발의)

**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원혜영·김윤덕·백재현·부좌현·진선미·김기식·최민희·김광진·전정희 의원 발의)

**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심윤조·김을동·홍지만·정병국·서상기·안홍준·박대출·서용교·이근현 의원 발의)

**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현미·남인순·박남춘·박원석·정성호·정청래·유승희·원혜영·이개호·이찬열·최동익·최민희·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26)

**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신정훈·임수경·이학영·김승남·박수현·정진후·윤후덕·유대운·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95)

**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박명재·이종진·최봉홍·양창영·황인자·송영근·이만우·박성호·이우현·함진규·윤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21)

**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황영철·강석훈·정갑윤·황진하·윤명희·박덕흠·유승우·이윤석·이에리사 의원 발의)

**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정문헌·염동열·김승남·강동원·박덕흠·한기호·장윤석·이윤석·이철우·김춘진·이한성·김종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94)

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개호 · 민홍철 · 양승조 · 박남춘 · 김성곤 · 오영식 · 김윤덕 · 이미경 · 최동익 · 노웅래 의원 발의)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이상직 · 박남춘 · 오영식 · 송호창 · 이개호 · 정청래 · 임수경 · 김광진 · 문희상 · 정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18)
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승남 · 한기호 · 장윤석 · 김춘진 · 박민수 · 김성곤 · 홍영표 · 최동익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22)
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 · 김성곤 · 박홍근 · 이상직 · 김기준 · 조정식 · 김상희 · 민홍철 · 인재근 · 김관영 의원 발의)
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이한성 · 권은희 · 정수성 · 정용기 · 박명재 · 서상기 · 신성범 · 박인숙 · 안홍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37)
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관석 · 안민석 · 이개호 · 김성곤 · 김현 · 민홍철 · 홍영표 · 배재정 · 백재현 · 서영교 · 인재근 · 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77)
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홍문표 · 이종배 · 김태원 · 이한성 · 이자스민 · 박민수 · 황주홍 · 조원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81)
2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노영민 · 배재정 · 한정애 · 이윤석 · 김관영 · 이석현 · 최원식 · 한명숙 · 김민기 의원 발의)
2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 · 정진후 · 노회찬 · 김선동 · 오병윤 · 박원석 · 김제남 · 이석기 · 김재연 · 김미희 의원 발의)
2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김윤덕 · 김태년 · 김형태 · 문병호 · 박인숙 · 박혜자 · 배기운 · 배재정 · 오제세 · 이상직 · 이재오 · 전병헌 · 전정희 · 진성준 · 최민희 · 홍종학 의원 발의)
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심상정 · 노회찬 · 박원석 · 서기호 · 강동원 · 김제남 · 장하나 · 유은혜 · 안민석 · 김용익 의원 발의)
2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조정식 · 배기운 · 오병윤 · 김영주 · 최재성 · 신장용 · 홍영표 · 김승남 · 은수미 · 문병호 · 박지원 · 원혜영 · 윤호중 · 이인영 · 김현 · 이연주 · 김기준 · 우상호 · 김태흠 · 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7)
2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연주 · 백재현 · 윤관석 · 우원식 · 이상직 · 김영록 · 문희상 · 문병호 · 김경협 · 유대운 · 인재근 · 최동익 · 노웅래 · 김용익 · 김승남 · 이상민 · 양승조 · 정호준 · 유은혜 · 김기식 · 박홍근 · 유승희 · 배재정 · 도종환 · 김기준 · 신학용 · 윤호중 · 박민수 · 홍의락 · 김영주 · 정성호 · 최재성 · 김재윤 · 최규성 · 이찬열 · 김윤덕 · 김진표 · 안규백 · 이인영 · 정청래 · 전순옥 · 김상희 · 오제세 · 진성준 · 박혜자 · 강창일 · 부좌현 · 우윤근 · 김광진 · 백군기 · 박범계 · 김현 · 원혜영 · 서영교 · 안민석 · 전해철 · 김한길 · 김현미 · 신경민 · 김춘진 · 이윤석 · 김관영 · 전정희 · 임내현 · 민병두 · 신기남 · 신장용 · 박수현 · 박완주 · 오영식 · 조정태 · 김민기 · 이우현 · 김동완 · 권은희 · 김한표 · 이강후 · 김형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1)
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한명숙 · 배기운 · 김현미 · 이학영 · 이원욱 · 조정식 · 김현 · 김태년 · 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7)
2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조정식 · 이윤석 · 최민희 · 신장용 · 배기운 · 최원식 · 이인영 · 도종환 · 주승용 · 이해찬 · 전순옥 · 이한성 · 전해철 · 강창일 · 윤관석 · 남인순 · 안홍준 의원 발의)
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성곤 · 유성엽 · 배기운 · 홍종학 · 안민석 · 박홍근 · 주승용 · 이학영 · 최규성 의원 발의)
2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부좌현 · 전순옥 · 박홍근 · 전정희 · 노웅래 · 최민희 · 유성엽 · 최재천 · 김승남 · 홍종학 · 이학영 · 김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2)

2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심윤조·김태환·강기윤·박성호·김장실·이노근·장윤석·이진복·김종태·이주영·윤진식·김태호·민병주·김현숙 의원 발의)
2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관영·김현·노웅래·박남춘·박혜자·배기운·배재정·설훈·오제세·유성엽·이목희·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2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백군기·정세균·신경민·김광진·진성준·한명숙·김춘진·이춘석·이석현·조정식·양승조·김윤덕·이상민·우윤근·배재정·유대운 의원 발의)
2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기운·박홍근·김성주·이만우·우윤근·정진후·박수현·김성곤·추미애·유성엽·정호준·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1)
2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현재·이채익·조현룡·이종진·김태원·이이재·김기선·김진태·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5)
24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배기운·강기정·한명숙·오제세·박수현·이언주·장병완·남인순·최동익 의원 발의)
2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효대·이우현·장윤석·김학용·김진태·이명수·김기선·강기윤·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0)
2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정진후·안철수·정성호·유은혜·전순옥·은수미·배재정·윤호중·김민기 의원 발의)
2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윤재옥·김기선·윤명희·김성태·이에리사·이만우·서상기·김진태·이운룡 의원 발의)
2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이한성·박대출·정희수·김무성·정갑윤·류지영·이진복·이노근·이채익·이에리사 의원 발의)
25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신정훈·이종걸·변재일·강창일·최규성·이윤석·김성곤·이춘석·우윤근 의원 발의)
2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박명재·이노근·유승민·심학봉·정두언·이우현·나경원·서상기·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01)
2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장하나·박민수·김춘진·이종걸·백재현·김영환·주승용·문병호·신학용·김승남·유성엽 의원 발의)
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나경원·심학봉·홍지만·이노근·박명재·이우현·정두언·서청원·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47)
2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승·강기윤·전하진·이이재·박대출·경대수·안덕수·박창식·이장우 의원 발의)
25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자스민·김태환·이명수·손인춘·이운룡·김태원·이노근·송영근·이한성 의원 발의)
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성곤·배재정·신정훈·이개호·이학영·장하나·전혜철·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2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우현·정우택·이한구·권성동·노철래·홍문종·김장실·이에리사·주영순·안덕수·신동우·권은희·이한성·김기선·윤진식·윤영석·현영희·김근태·이현재·주호영·심윤조·유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311)
25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정우택·유기준·이한구·김용태·심재철·황영철·조원진·홍일표·서병수·서용교 의원 발의)
2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박완주·신장용·백재현·박홍근·김우남·김춘진·김동철·이원욱·배기운·김태년·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
2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이현재·하태경·박인

- 숙·정갑윤·김정록·김태원·김을동·정수성·이헌승·박민식·유기준 의원 발의)
- 26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안민석·이원욱·문병호·유대운·배기운·심재권·조정식·신경민·최원식·정성호·황주홍·홍종학·전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0)
- 2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노회찬·박원석·서기호·강동원·김제남·장하나·안민석·김용익 의원 발의)
- 2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황영철·강기윤·이자스민·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김을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0)
- 2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조정식·배기운·오병윤·김영주·최재성·신장용·홍영표·김승남·은수미·문병호·박지원·원혜영·윤호중·이인영·김현·이언주·김기준·우상호·김태흠·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8)
- 2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한명숙·배기운·김현미·이학영·이원욱·조정식·김현·김태년·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5)
- 2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유성엽·유승희·배기운·이원욱·전병헌·원혜영·홍종학·전정희·문병호·최민희·조정식·이해찬·강창일·민홍철·김광진·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1)
- 2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경협·김관영·전병헌·박주선·윤후덕·송광호·신장용·배기운·홍종학·최원식·유승희·강창일 의원 발의)
- 26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심윤조·김태환·강기윤·박성호·김장실·이노근·장윤석·이진복·김종태·이주영·윤진식·김태호·민병주·김현숙 의원 발의)
- 26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이이재·이만우·이재오·이채익·강기윤·박남춘·정희수·박덕흠·윤재옥·김세연·정수성·황주홍·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4)
-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영근·홍지만·최봉홍·이운룡·김기선·한기호·정희수·박대출·문대성·전하진 의원 발의)
-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홍종학·강기정·이원욱·李宰榮·정호준·김광진·김상희·김성주·강창일 의원 발의)
-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오제세·최동익·우원식·김성주·양승조·이언주·남인순·홍종학·인재근 의원 발의)
-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이자스민·장하나·김재연·김광진·조해진·이현재·안효대·이강후·유승민·정희수·이만우·박홍근·심윤조·이이재·김세연·주영순·정호준·장윤석·박인숙·이주영·이장우·권은희·안종범·민현주·이종훈·류성걸·윤명희·조명철·김상민·남경필·김기선·손인춘·김현숙·이인제·金永柱·문정림·김영우·여상규·김명연·신경림·이재영·김광림·김진태·이에리사·민병주·박창식·김장실·신의진·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816)
-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배기운·원혜영·부좌현·이언주·강창일·남인순·박완주·김정록·한명숙 의원 발의)
-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은희·권은희·김희선·문정림·서용교·손인춘·이노근·이우현·이헌승·전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599)
-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5)
-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784)

-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안효대·이우현·장윤석·김학용·김진태·이명수·김기선·강기운·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9151)
- 2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윤재욱·김기선·윤명희·김성태·이에리사·이만우·서상기·김진태·이운룡 의원 발의)
- 28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수현·김광진·손인춘·송광호·노용래·진성준·부좌현·배기운·박혜자·박홍근·장하나·박남춘·김경협·김태호·이연주·박민수·김세연 의원 발의)
- 2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李宰榮·김현숙·이한성·류지영·안홍준·신경립·장윤석·김무성·문대성·이자스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58)
- 2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권은희·김동완·김무성·김을동·류지영·박대출·박윤옥·서청원·신경립·윤명희·이명수·이우현·이에리사·이한성·이현승·정문헌·조해진·함진규·홍문중 의원 발의)
- 2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정록·이노근·박인숙·조명철·이에리사·이만우·최봉홍·황인자·신경립 의원 발의)
- 2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정진후·김미희·김재연·송호창·이학영·전해철·박남춘·이원욱·김윤덕·은수미·김제남·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11)
- 2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정진후·김미희·김재연·송호창·이학영·전해철·박남춘·이원욱·김윤덕·은수미·김용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24)
- 28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상민·김성찬·김용태·김종태·문정립·안덕수·윤명희·이완영·이이재·이한성·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8)
- 2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이해찬·정청

래·노용래·홍의락·임수경·이인영·진선미·김승남·홍종학 의원 발의)

- 2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홍철호·정병국·송영근·김제식·심학봉·이노근·이한성·서상기·홍지만 의원 발의)
- 2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관석·안민석·이개호·김현·민홍철·홍영표·배재정·백재현·서영교·박민수 의원 발의)
- 2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안홍준·이채익·정수성·여상규·김도읍·유승우·양창영·김한표·박인숙·조원진 의원 발의)
- 29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 29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 29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5.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6.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7.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7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제89항 제128항 제256항 등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혜영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바라는 국민



의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20대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 선거구 재획정을 비롯하여 정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7월 2일과 2013년 5월 1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 40일 이내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5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재정적 부담은 물론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 불규칙한 선거로 인한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두 차례 보궐선거를 한 차례로 줄이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6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미국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 메일 발송, 전단 배포 등 다양한 비정파적인 투표참여 독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호별 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 전달을 위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들로 하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의 정수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가부 여부

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20일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전국 정당 외에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결사체로서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풀뿌리 자치정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자치정당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과는 별개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30인 이상의 당원이 있을 경우 자치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즉 2015년 10월 초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월 임시국회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선진화법의 결실로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었듯이 선거구 획정 역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확정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준수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과 선례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원혜영 의원님 훌륭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71항 및 제135항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경기도 파주 출신 윤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 등은 모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이미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고등학교의 정치화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8세는 4만여 명에 불과하고 18세 인구 70만 명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후보자도 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정책으로서 검증·선택·평가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및 단체장 후보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고 또 판매할 수 있고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이것이 불가능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

원 후보자도 후보자 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지 크기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명함과 함께 직접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모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윤후덕 의원님, 정개특위에 직접 나오셔서 구두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51항, 제64항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66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말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검사가 허위라는 입증은 직접적·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

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서 탄핵되었으므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혹 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제 검사는 의혹 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7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최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지역의 ‘공천=당선’의 등식을 없앨 수 있고 공천 잡음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충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4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행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승인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일시 및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개인정보 통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

해서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영선 의원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1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1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議員**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현행법은 또 인구와 관계없이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와 관계없이 1인으로 하는 규정,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위원의 정수는 인구 하한선에 관계없이 최소 1인으로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에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위와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규정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무려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이 선거구 획정에 분명 행정구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 5인이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는 최대 20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려운 행정구역 편차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면 국회의원 1인이 무려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5인 이상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는 무려 25 대 1 이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경제적·지리적으로 나뉘어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 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구성의 2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입니다. 국민은 5000만 인구조로 구성된 반면, 영토는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인구와 행정구역이 균형 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어도 3개의 자치구·시·군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배출할 수 있도록 1개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장윤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그러면 아직 도착을 안 하셨으니까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5항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

고양시 덕양구 출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에 제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론에 좌고우면하며 정당·정치인 간의 유불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주권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1987년 이후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 지역 기반이 약할 경우 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의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권역별로 국회의원 수를 할당한 후 각 정당의 해당 권역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의 해당 권역에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해서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 입법 청원은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인을 합하여 36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 정수가 증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 49조2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 제189조제1항을 신설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할당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법 189조2항을 개정해서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석 이상 당선율 기준으로 의석할당 정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 안 제189조제4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배분은 해당 권역에서의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출하여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 제189조제5항을 신설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 제189조제7항을 신설해서 정당이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 선거 권역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입법 청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한국 정치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철 의원께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다가 다시 통보가 와서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 문 앞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서 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 인권·병영 개선 특별위원회에서요, 거기서 또 제가 간사로서 보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끝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

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공동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한 누적된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 여러 가지 고려요인 중 인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려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기준조차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한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 편차에 대한 기준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 농어촌 지방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당 지역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월 2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해석을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입법화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안에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확정하도록 현재의 결정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두 번째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내용은 현재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주 작은 1개의 기초자치단체라도 도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게 한 규정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 면적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관할 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 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구 편차만을 고려한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 지방의 의견이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적인 정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안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황영철 의원님께서 훌륭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관련 부분에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284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석**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안건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4건, 정당법 28건 및 정치자금법 35건 등 총 297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재보궐선거, 재외선거, 벌칙,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내용에 따라 정당 활동, 정당 조직, 정당 설립 및 소멸, 당원 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지구당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내용에 따라 출판기념회, 국가보조금, 선거보조금, 후원회 설치·운영, 기타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출판기념회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원은 총 297건이나 1건의 법률안이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한 법안의 수는 총 37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청원은 총 297건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2 대 1 이내로 재조정해야 하므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소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기춘 의원안, 박성효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이상규 의원안 및 하태경 의원안은 현재 국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설치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경우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선거구 획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이 법에서 명확

하게 규정하는 등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민 의원안과 이상규 의원안은 최종적인 위원 위촉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려는 것이고, 박기춘 의원안, 박성효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은 국회,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각각 정해진 수의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국회의장에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비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기춘의원안과 박성효 의원안 및 하태경 의원안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게 나누어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다 잘 수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선거구 획정안의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기춘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 이상규 의원안, 원혜영 의원안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중 이상규 의원안, 원혜영의원안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1회 또는 2회에 한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박성효 의원안은 국회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상민 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헌법 제41조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넷째,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성효 의원안, 장윤석 의원안, 황영철 의원안

은 공통적으로 선거구 획정 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의 예외를 법률에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외국과 달리 농촌지역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국회의원의 수를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하여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대 1이 넘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 기준에 의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성호 의원안과 황영철 의원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가 이 비율을 선거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확정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면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법률로서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확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동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 소개 청원은 각각 국회의원 정수를 368명,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의 운용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선동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 소개 청원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심상정의원 소개 청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청원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하에서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한 1인만 선출되어 과다한 사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소개 청원과 같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되 정당별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패율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기정 의원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입후보한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명부와 같은 순위에 2명 이상 입후보하도록 하며, 중복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강기정 의원안은 해당 지역구가 속한 시도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면서 강기정 의원안이 30% 이하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해당 지역구가 속한 시도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외선거의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에 관한 사항 중 개정



시급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의원안과 김학용의원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행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을 허용하려는 개정안들은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관리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150일인 2015년 11월 15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을 허용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시스템을 구축 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약 13억 5500만 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김태년 위원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개특위를 하면서 사실상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아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는 아마 우리 정개특위 활동이 앞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기대가 큰데요, 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간사 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선거구 획정을 수정했던 그 권한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득권을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큰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우선적으로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일전에 전체회의 때 우리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포지티브형 선거법을 네거티브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큰 취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2013년 6월에 선관위에서 제출했던 의견에다가 더 보완해서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그게 오지 않아서 지금 작업 중인지 또는 그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소위가 구성이 되면 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소위로 바로 넘기실 일이 아니고 소위가 가동되기 전에 각 당에서 또 자체 정개특위도 있고 논의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태년 위원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조금 시간 주시면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정문헌 위원 의사진행 있습니까?

○정문헌 위원 ……

○위원장 이병석 없습니까?

김태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소회의실에서 양당 간사와 함께 8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최대한 선용해서 이 기

한을 넘기지 않고 관련된 모든 정치개혁특위의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역순해 보면 4월 임시국회 안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의결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입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양당 간사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합의하신 만큼 양당에서 1소위, 2소위 구성도 좀 빨리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명단이 확정되면 소위 활동도 차질 없이 이어서 계속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가능한 빨리 자료 제출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토론시간은 위원한 분당 7분씩 하도록 여야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그런 합의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모두 다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법이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치러져야 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정개특위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의 망

국적인 그런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 관련해서 나온 법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서 회의에서도 그렇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의견이지만 그 방법론에서 약간씩 편차가 있고, 그 내용상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보니까 국회에 두고 있는 곳은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 모든 의원들 안이 지금 원혜영 의원님 안만 빼고는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도 선관위에 두고 있는 데가 호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국회나 선관위가 아니라 아주 별도의 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난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정말 독립적이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두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총장 의견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지 않고 완전히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지금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랄지 여타의 산하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예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선관위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두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실무적으로는 선관위라든가 정부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실무진을 파견해서 실무진의 실무 도움을 받고 거기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온 법안들 보면 대법원장이나 선관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의 추천, 그러니까 추천을 직접 하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나 국회나 이런 데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계나 법조계…… 지금 이상규 의원안이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여기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한다 그랬는데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관위 이쪽에서 아주 다수의, 몇 배수의 인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몇 명을 그 안에서, 그 풀(pool) 안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중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학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몇 배수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여야에서 이 중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을 제척을 하는 것이지요. 제척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11인이면 11인, 15인이면 15인 정수를 반반씩 추천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공정하게 중립적인 인사로 위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본회의에, 여기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는데요.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에 외부에 두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경우가 하나 뿐인 것 같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선거구, 그러니까 인구를 다루는 기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구의 편차를 우리처럼 2 대 1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상희 위원 알겠는데요, 사무총장님.

선관위에 두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선관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데 굳이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실무적 역할을 하지 말고 선관위와 국회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파견한 공무원들로 실무를 구성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그 부분도 완벽하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실무진조차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충분히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했을 때에는 상설기구화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 한시적으로 하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상훈 위원** 새누리당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출발한 제헌국회가 정수가 300명이 되기까지 63년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268명, 260명, 급기야는 우리 야당의 최고지도자께서 40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질적인 필요성을 지적한 본인들의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가 의사 합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정수를 조금 자의적으로 늘려 나가는 데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또 국민들께서 비생산적인 여야 대치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국회의 규모가 커져서 합의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회를 대표해서 여야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또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수와 관련된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된 판결의 결과로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조건 없이 의원 정수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것은 그 권역별 비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만큼 그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원 정수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운석·황영철 의원님께서 두 제안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표의 등가성과 관련된 그런 판결을 넘어서서 행정구역상의 편차, 예를 들면 1개 기초자치단체에 5명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5개 기초자치단체를 합해서 1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행정구역 편차가 25 대 1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구편차 2 대 1과 행정구역 편차 25 대 1이라고 봤을 때는, 저번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아마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정구역 편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판결문 전체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지세나 지형이나 모든,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인구 2 대 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해 주시고 또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총선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하는 이 방식은 한국의 정당정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대 전환점이 될 그런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데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오픈프라

이머리를 정말 꼭 필요로 한 지역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호남의, 특정 정당에서 거의 대부분 당선되는 그 지역의 경우에는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서 선거구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전국적으로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할 경우에, 정당에서 의도할 경우에도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상훈 위원** 그런데 그 최소한의 조건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컨대 흔히 이야기하는 역선택을 하는 문제랄지 또 혹은 정치신인이 진입하기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법은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지만 그 공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전히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입후보 예정자들을 다 선거에 내보내 가지고 경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또 고르고……

○**김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 유효한 공천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그런 제도로 만약에 정착이 필요한 것이라면 입법화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요건 정도는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위원장 이병석**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계속되고 있는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현재 판결대로 지금 인구 편차를 2 대 1로 할 경우에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숫자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선거구 확정

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농촌이나 지역의 대표성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재 판결인 2 대 1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역구 문제에 있어서 그걸 2 대 1을 뛰어넘어서 하는 방법은 현재의 현재의 결정사항을 위배해 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상정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이걸 결국 헌법의 평등선거, 국민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를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민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다 이것을 가장 기본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를 하고 우리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안을 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계속 헛갈리면 논의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의원 정수 문제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필요한 의원 정수 이전에 지금 선거구 획정을 2 대 1로 하는 데 있어서 의원 정수의 변동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비례를 꼭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가 얼마만큼……

○**심상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권역별 비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 대 1 편차를 맞추는데 지금 현행 64개인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 대 1로 맞추는데 의원 정수의 조정 없이 가능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의원 정수 조정 없이도 가능하고 줄여서도 가능하고 늘려서도 가능하겠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 아니, 일단 지역구 의석수만 기준으로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지역구 의석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정말 지역구 한두 개 없어지는 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하기가 궁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200석까지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석까지고 맞추려면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폭 줄여야 되겠지요. 그 안을 놓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의원들이 논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기 당 포지션에서, 이게 무슨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서로 논란을 벌여 봐야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2 대 1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 현재 246명을 기준으로 해서 2 대 1로 적용할 때, 지금 2 대 1 인구 편차를 적용할 때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놓고 줄였을 때와 그러면 도대체 몇 의석이 얼마나 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게 왜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심상정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의지의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 대 1 편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246석 아니라 100석 갖고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다 봅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지금 일부에서는 추가의석수를 최대한 줄여서 이걸 비례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사례, 일본은 지금 위헌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차례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에 지난해 12월 총선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이 17건인데 이 중에 3건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최대한 인구상한선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끼워 맞추는 거지요. 끼워 맞춰서, 의석수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확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궐선거 할 때 되니까 이게 인구상한선을 넘어 버린 겁니다. 또 인구하한선을 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위헌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구증감에 따라서 일부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이 위반돼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지금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 점을 저는, 아까 같은 추가의석수를 최소화 해서 비례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지금 당장의 인구 편차만 좁혀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접근을 가지고는 우리도 계속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중앙선관위에서 좀 상세하게 자료화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물겠는데요. 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국민 경선 비용을 국가가 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래야 될 걸로……

**○심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선거비용도 비싼데 두 번의 선거를, 국가에서 두 번의 선거부담을 지겠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심상정 위원**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때 추가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약 한 400억 좀 덜 들 걸로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이 오픈프라이머리가요, 지금 말끝마다 국민의 세금, 세금 이야기하는데 정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위원장대리 정문헌** 더 하시겠습니까?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문헌** 예,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할 때 또 비용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서, 특히 지금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도 아주 비상식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구조인데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

로 하는 그런 방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천권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정당에서 3 대 7이든 5 대 5든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다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건 거대 양당 눈치보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안을 내신 겁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선관위원회의 월권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를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총장님,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특히 대법원, 법원까지 기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로 저희 국회가 선거구 획정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국민 중의 일부가 내년 총선금지가처분을 하면 저는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이번 말고 지난 19대가 총선이 있기 직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소위 원칙조항을 허물어뜨리고 단서조항 “다만, 제2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확대·왜곡해서……

21조 1항 본문 후단 요건이라는 것은 이겁니

다. ‘299인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 정수 최소 3인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1인 이것 외에는 경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 소속위 자치구 혹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가지고 케리맨더링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주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국회가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잘못 확대·왜곡 해석해서 케리맨더링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난번에도……

○**박범계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구가……

○**박범계 위원** 그 불가피한 경우가 법이 허용하는 그 불가피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회의에 그 사례를 가져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이번 62개…… 다시 인구 변화가 있어 가지고 58개인가요, 59개? 지금 아무튼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권위적인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께 권역별 비례대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지역대표적 사회적대표제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상당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그중에 100석 비례대표의 절반을 적어도 인구비례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시도에 균등 안분, 비례 배분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정치학자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충청·영호남 모두 공히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는—그런 건 동의를 하셨습니다—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영호남과 충청에 고루, 적어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혜택이 돌아

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또 하나, 이번에는 다른 제가 낸 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체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8번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불법운동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용관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확정이 됐지만 그러나 누구도, 무죄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권유할 만한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라고 판단하는 국민은, 어떤 국가기관도, 어떤 공무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유무죄를 떠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꼭 김용관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그 뒤에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86조를 보완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서, 직위를 남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박범계 위원 그 개정을 하셨지요? 그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그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에는 기관이나 그 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경우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하신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그러나 지난번 원세훈 씨처럼 기관이나 조직의 전부 혹은 일부가 조직적으로, 기관·단체 대표자의 명의를 걸지 않고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 그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이기 때문에 지시를 한 사람도 처벌이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사람도 처벌이고……

○박범계 위원 개별 처벌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제 얘기는, 제가 낸 118호 안건은 조직적으로, 그게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관의 이름을 걸지 않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사를 지연하거나 허위수사 등을 한 때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김용관 씨가 무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적어도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총선거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이 엄격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범계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별적 공무원의 행위를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조직적 행위에 대한,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범계 위원 또 하나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인천시장께서, 유정복 시장께서 장관을 그만두실 때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이곳 국회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으로 관용적으로 양성화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공표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좀 엄하게 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낸 법안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아니, 청와대 갔다 오고 장관 된 사람들만 왜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사실상 대통령 이름을 팔고 ‘대통령이 사실상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시장이나 국회의원 되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사적인 행위를 빙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문헌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 새누리당 김희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국민경선에 대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선관위에서도 정당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안을 내셨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영호남과 같이 어느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와 닿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정당에서 예비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러니까 각 정당의 경선을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특정 정당이 어느 특정 지역 싹쓸이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싹쓸이가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

○김희선 위원 ‘공천=당선’이라는 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당선이니깐 그 경우에 한 사람만을 정당에서 공천자를 내보냈을 때 그 지역의 선거권자는 오로지 그 사람 밖에는…… 사실 그 정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정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정당에서 두 명 세 명의 후보자를 내놓고 유권자가 선택하게 한다면 그 범주 내에서는 선택권이 있다……

○김희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이 조금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아, 그런 취지시구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 지나치게 공천에 예측이 되어서 국회의원의 자발성이랄까 자율성이랄까 독자성이랄까, 그렇지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분을 조금 어기고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당 공천에만 의존하는 그런 폐해를 막고 당내 민주화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느 특정 한 정당만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만에 하나 역선택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만 하고 다른 정당이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컨대 그것을 부추기는 것을 누가 조직적으로 한다면 하고 하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김희선 위원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다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선택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미국도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당들이,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허용하고 있는 주의 경우에 정당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역선택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래도 그 정당이 후보를 내서 예비선거를 한번 치르고 났을 때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본선거에서 굉장히 당선 확률이 높더라 이런 통계적인 것들이 있어서……

○김희선 위원 아, 미국의 경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미국의 경우에 주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날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와 아닌 주가 어떻게, 어디가 더 많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통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다음에 저희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위원회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의원총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선관위안에도 보면 여성의무할당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중의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완전국민경선이라는 것은 후보를 남자를 하든 여자를 하든 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 또 예를 들어서 30%라는 여성의무할당을 꼭 의무화 한다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그 당에 준다는 것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경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뽑은 결과에 대해서 왜 당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모순을 어떻게……

우리 선관위도 지금 여성의무할당제를 해 놓았고 또 지금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 부분도 정당의 결정사항일 수도 있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희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만약에 입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30%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남녀를 같이 공천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당에서 할 때.

○김희선 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은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만약에 그것을 법률로 정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그것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여성 지역구로 만들어서 여성들만 공천을 하는…… 지금 현재도 30% 의무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특정 지역에는 여성만 공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희선 위원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희선 위원 그렇다면 또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은 여성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지역은 여성으로 한다라는 게 또 정신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성·소수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위헌 문제의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것 좀 여쭙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만든 국민경선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호결정 방법에 있어서 ‘현행과 같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호를 결정하신다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당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의 기호는 당에서 결정을 해서……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여러 개가 있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정당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국민이 가서 그중의 어느 한 투표용지를 골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그 방식도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데 미국식으로 그렇게 되면 블랭킷(blanket) 형식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투표용지에다 다 넣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달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설명하신 블랭킷 제도에 가까운 그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여기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박영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선관위가 기본적인 틀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권은 어떻게 하고, 경선일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경선일도 법정화하고, 경선 결과 최대득표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가 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당별로 투표용지는 달리 하고 선거인명부는 동일한 명부로, 하나의 명부로 하고 거기에 와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달라고 서명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어느 당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해서 투표하는 방식을 구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뭐냐 하면 ‘그러면 당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권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한국적 특성입니다. 미국은 각자 그냥 나눠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고 한다 하면 큰 투표용지 하나에다 모든 정당을 다 담아서 그중에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해서 투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우려를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영선 위원** 그런데 흔히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closed open primary)라고 하는 것은 당원만 가서 하는 것이고, 또 반폐쇄형(semi-closed) 이것은 당원은 자기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하고 비당원은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해서, 섞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블랭킷형 이것이, 지금 우리 선관위가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블랭킷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블랭킷형은 모든 후보자를 한 투표용지에 등재를 해 가지고 당적에 관계 없이 한 명의 투표자한테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각 정당의 최고득표자가 본선거에 진출하도록 하는 이것이 블랭킷형이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용어 선택에서 혼선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낸 것은 각 정당별로 후보자를 한 명씩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다만 투표용지 형태를……

○박영선 위원 글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제출한 것은 이 블랭킷형에서 하나 더 진일보한 비정파형, 그러니까 논 파티슨(non-partisan) 이것을 제가 법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을 왜 냈냐 하면 블랭킷형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소수정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비선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중에 누구 한 명을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1등과 2등이 본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해 보니까 그런 어떤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소수정당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진화한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만약에 이 블랭킷형의 지금 선관위가 낸 그런 제도와 또 이런 어떤 비정파형 제도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비정파형 제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정당정치가 너무 그러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 자체가 공천권을 국민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국민한테 준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것, 저는 이것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 역시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각 정당에서 예비선거에 나갈 후보는 내놓되 정당과 구분 없이 1등과 2등만 잘

라서 본선거에 진출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일 정당에서 후보가 둘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정당은 다 못 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국민 의사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아서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장점이라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도라는 것은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 다 있는데, 그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가장 부각시키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저희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어쨌든 우리가 안 해 본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나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당인 경우에는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 야당은 계파정치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가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가장 큰 장점은 당에서 임의로 후보를 냈을 때 그 후보들이 한 명도 진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부담을 져야 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의 박대동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안도 내시고 좋은 의견들도 개진을 하셔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존경하는 우리 김희선

위원님께서도 벌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드린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 리더 그룹이 약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로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역을 정하든지 특별 비중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충돌이 되지 않느냐, 특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소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위헌성부터 생각해서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우리 선관위에서는 좀 미리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다음에 특히 지역정당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해소해 보자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석패율제나 이런 것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관위안에 보면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2 대 1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굳이 안 지켜져도 괜찮은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권역별 비례가 결국은 의원 전체 숫자를 정당에 기표한 득표 비율대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것을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일정 수의 비례대표 숫자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비례대표 숫자가 적게 되면 아마 초과 의석수가 다수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을 200석까지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상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의 결정에 의하면 약 25~26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 미달돼서 손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권역별 비례로 가게 되면 정당이 득표하는 제2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에 의해 가지고, 그 득표 비율대로 의원 전체의 정수가 나뉘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례대표에 나가는 후보들이 대부분 초선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정당은 전략적으로 거기에 가장 중진 그리고 그 권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력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비례

로 내세워야 아마 그 정당이 2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선의원을 거기에 다수 차출할 것이다, 적어도 각 권역별로 두세 명씩만 차출한다고 한다면 또 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100석까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박대동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로 엇그제도 의석수 때문에 언론이나 여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박대동 위원 그것처럼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2 대 1로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다 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 보는 것이고.

특히 독일식 병용제가 되면 초과 의석 발생이 불가피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또 정치신인이나 전문가, 소외계층, 직능대표 이런 분들의…… 대의기관의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예컨대 석패율로 한다 해서 이 후보를 우선순위를, 권역별 비례대표보다 순위를 앞에서 놔뒀을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비례대표제 원래의 목적을 떠나서 전문성이 없거나 직능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쪽 논의했지만 농촌지역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지 않느냐, 대표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소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수를 대표하는 것을 비례대표로 보장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하더라도 농촌 출신을 비례대표의 상위에 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동 위원 결국에 일반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 불리하고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인구 집중되고 하

니까 더 많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오해를, 해명을 하고 간다면 저희가 지금 안 낸 것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 비율과 권역별 비례로 했을 때의 의석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비율과 우리가 권역별 비율로 갔을 때의 의석수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비율에 변동이 없고. 서울이 변동이 없더라는 것은 다른 데도 거의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해 봤을 때는 호남지역에서 의석수가 약간 좀 줄고 그것이 충청권과 경기권에서 한두 석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수준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의석수 비율과. 그래서 권역별 비례가 도시지역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약화시킨다, 그것은 그 권역 내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결부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 권역별 비례로 가기 때문에 서울 쪽이나 이런 수도권 쪽에 강화된다 그것은 좀 오해에서 비롯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박대동 위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예, 1분 더 하십시오.

○**박대동 위원**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이게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시행돼야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 예컨대 역선택의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요. 만약에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럴 때에 선관위에서 제의할 만한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가 제안할 만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만약에 그 정당이,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쪽 정당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차가 거의 근소하다고 한다면 역선택의 문제가 충분히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당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당이 선택하게 해서 그 문제는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동 위원**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선거가 좀 많다는 느낌 안 드세요, 선거 횟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거 횟수가 좀 많지요.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횟수가 많은 것이 정치적으로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인지 피로도가 증가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피로도가 증가하고 정치적 불신의 요인이, 선거 때마다 갈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거를 좀 줄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물론 다 예측이 가능해요. 법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좀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선관위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문헌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선 지금 4대 지방선거, 지선을 우리가 6월 달에 치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백재현 위원** 그게 농번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더위도 문제가 있고 또 6월 달, 7월 달…… 7월 말이나 선거 또 치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고쳤으면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문제는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거의 경우에는, 그즈음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말 선거하고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다 통합해서 치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방선거만……

○**백재현 위원** 그래서 지방선거도 4월 달로 당기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4월 달로 당기고 4월 후에 바로 치르는 선거는 없애고, 그래서 4월과 10월에만 선거가 있는 걸로 정해서 선거 일자를 좀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는 100%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안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선관위

안을 지금 따로 하기는 그렇고요, 소위 할 때 저희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소위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아마 이 법안이 들어와 있어요, 몇 분 의원들이. 그래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를 좀 줄여 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이게 결론이 나와 다른 일이 진행이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획정위를 구성하더라도 지역구를 몇 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에 보면 2 대 1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있고 아까 황영철 의원이나 장운석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행정구에 대해서 25 대 1의 편차, 20 대 1의 편차를…… 아마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백재현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현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정한 그런 기준을 달리해서 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면 현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100%……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가 행정구 그런 지역의 대표성 인정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진행해서 내년도에 선거를 그렇게 치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 입장은 현재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요, 공식적으로.

○**백재현 위원**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와 같이 요건을 달리 적용해서 입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또 현재의 결정을 받아 보면……

○**백재현 위원** 현재에 들어가면 그게 하루, 이틀에 결론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내년 선거 때까지 그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마 선거 전에 결론 날 리는 없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입법을 한다 한다면 선거는 그렇게 치러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현재는 판단을 하겠지요.

○**백재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게 위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건 또 소위에서 논의를……

어쨌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200석과 관련된 건. 현재 지역구 246석을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료는 내용을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낸다, 이 안은 내용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놓는 순간에 이미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거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라도 숫자를 내놓으실 용의 없습니까? 그런 정도는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숫자 정도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2 대 1 기준에 맞춰서 246개 지역구일 때 도 단위, 도별로 시뮬레이션한 내용과 선관위에서 제시했던 2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203석이요? 자료 보니까 203석이던데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놓았던 자료를,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도별로라도 숫자적으로 좀 내놔야만이…… 지역을 나누기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고 개입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그런 숫자만이라도 제시를 해 놔야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건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06분)

○위원장 이병석 지금 대체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의결정족수를 감안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우리 특별위에 공청회 실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98. 공청회 실시의 건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298항 공청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향후 우리 특위 활동 일정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실시될 공청회의 주제 및 진술인 등 세부적인 계획 등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정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 국민들로부터 내지는 또 국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혹시 그 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대한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이병석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희가 낸 안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학계나 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신정훈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개략적으로 언론이나 국회의 어떤 반응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통한 지역주의 정치의 완화 그리고 또 국민의 대표성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 보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신정훈 위원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당제도의 활성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법 개정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농촌지역 대표성 보완 문제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총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신정훈 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대안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던데요. 지역구를 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결정을 존중하다 보면.

그래서 권역별 비례를 했을 때 그 권역에 인구 비례로 할당해서, 다 일률적으로 나누기 전에 절댓숫자를 각 권역별로 먼저 배분하고 그다음에 남은 숫자를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현재의 결정 취지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선관위에서 제기한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도 역시 우선 제시한 안을 보면 인구 비례만 고려한 것 아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지요, 지금 우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백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의 결정은 있지만 국회의 결정이 있으면 선관위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과 함께 모순되게 현재의 결정이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현재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지역구라든가 이런 특정 기준에 의해서 유지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전히 현재의 위헌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다만 그런 방식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입법은 안 해 봤거든요. 그런 입법을 해서 다시 현재의 판단을 받는다면……

○**신정훈 위원** 혹시 그러면 외국의 사례의 경우 그런 사례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를……

○**신정훈 위원** 이런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그런 조사를 해 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외국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정훈 위원** 아무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공감하시고 또 노력을 한번,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농촌지역 대표성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관위가 200개라고 하는 지역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13만 9000이라고 하는 인구 하한선은 200개 지역구로 대비해 보면, 아까 심상정 위원님이나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물레이션 해 보면 아마 몇 개의 지역구, 인구 상한선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나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건네준 자료를 보니까 상한선은 34만 1000 정도이고요, 하한선은 16만 9000 정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신정훈 위원** 13만 9000에도 지금 66개의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될 처지인데 16만 하한선을 적용한다면 아마 지금 선거구 전체, 단 한 곳도 조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맞추기 쉽지 않겠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의원정수 246명의 현재 기준을 맞추려고 해도 25개 선거구는 지금 불가피하게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한 20석을 더 지역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100석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권역별 비례로 간다면 정당 표가 의석수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그런 만큼……

○**신정훈 위원**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구 200개라고 하는 이 문제가 현재의 지금 13만 9000으로 하더라도 지역구 이십 몇 개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200개까지 줄였을 때 조정되어야 될 농촌 지역구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선관위가 느끼는 그 위기감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사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단히 혁명적인 상황이다라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좋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문제나 의원정수 문제를 피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논의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래서 저도 지난번 회의 때 현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전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정훈 위원** 1분만 더 말씀……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시지요.

○**신정훈 위원** 이왕 좋은 안을 제시한 마당에 현실성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시행에 따른 필요 의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

들을 다 국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따르는 필요 의석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구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역주의 정당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마당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역정당, 자치정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정당 설립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제가 원혜영 의원님 안을 보니까 국가 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공천하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정당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훈 위원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것도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가 정당설립 요건에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 시·도당을 가지고 있고 그 시·도당은 법정 당원 수를 몇 명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한 것은 헌법 8조가 이야기하는, ‘국민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구체화한 것이 정당법의 그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지 않고 한 지역에만 국한해 가지고 한 정당을 국가의 정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년 신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말하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시에 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한 당만 선택했을 경우에 역선택의 문제 이게 큰 부작용으로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경대수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역선택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규제를 해도 만약에 한 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그 부작용을 막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법으로 모든 것을 100%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그 법을 정해 놓으면 반대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적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느 한 당만 하는 것도 총장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냐,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취지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한 당만 해도 가능하더라는 문제를 법에서 규정해 주지 않으면 정작 해야 되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도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한 당만 참여해도 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예컨대 서울·경기처럼 침예하게 양 정당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저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당이 철회함으로써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대수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서 하는 방안에 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한 걸로 아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개특위가 아니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앙선관위로 가자는 의견이 많아요,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거기 가더라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이 국회에 왔을 때 국회에서 그냥 수정 없이 사실상 통과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앞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상 국회입법사항입니다, 선거구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좀 짚막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먼저 말씀하신 선관위 산하로 했을 때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이야기한 김상희 의원님 안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경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민 우려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독립기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뒤의 부분……

**○경대수 위원**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을 국회에서 별도의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만큼 저는 한 차례 정도, 만약에 획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도저히 국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게 하는 그런 것을 둠으로 해서 입법권 침해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리고 거기에 결들여서, 다른 나라들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의원 입법으로 하라라고 하면서 그런 획정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획정위원회를 두어서 한나라라고 의원 입법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장님도 원래 출생지가

농촌 지역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경대수 위원** 제가 지역구가 충북의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인데 이게 다 농촌 지역입니다. 우리 정개특위 위원 중에도 충청도 출신은 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위원 둘인데 글자 그대로 농촌은 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나온 이야기지만 또 한번 반복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편차 2 대 1 기준을 정한 현재 결정은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경대수 위원** 그렇지만 앞에서 법률 개정안 제안설명하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내용처럼 행정구역의 편차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법에서 보면 지형이나 지세, 역사, 교통, 문화교류, 생활권,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밀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경대수 위원** 실제 농촌 현실을 보면 어떤 자치단체 지역구는, 군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 수가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고령화가 30%가 넘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해마다 인구가 줄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지역구를 정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 때 또 인구가 줄어서 2 대 1 기준에 못 맞춰 갖고 똑같은 시비에 휘말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촌 지역은 계속 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앞에서 총장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에 선거구가 없어지는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태년** 1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특정 군의 지역주민들, 특정 선거구의 지역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비례대표 하나 우리 지역 출신이 갔다 이래서 그 지역의 상실감이 극복될 수 있는지, 농촌 현실을 보면 읍·면 단위의 군의원 하나 없어도 상실감이 큰데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현재 결정 취지를 저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소위가 구성이 되면 기준을 달리해서 적용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선거구를 확정해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에도 현재는 여전히 위헌 결정을 할 것인지, 안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경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현재 판결이 있고 나서 총인구를 246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 가지고 기준인구를 잡으신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유인태 위원** 그렇게 잡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제도가 안 되고 현행 제도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한 20개는 늘어나는 걸로 시뮬레이션한 게 나오지요, 대도시에서 많이 늘어나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줄여야지요.

○**유인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인구 나누기 246 그대 가지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게 지금 기준인구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유인태 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현 행정구역 가지고 하면 한 20개가 늘어나는 걸로 대개는 그렇게 추산이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니, 지금 하한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늘어나는 거고……

○**유인태 위원**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246을 가져간다 그러면 결과가 거기에 맞게끔 원래 기준인구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총인구를 246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인구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이백육십몇 개의 지역구가 생기는 인구단위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인태 위원** 아니, 지금 246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십삼만 팔천 몇 백, 이십칠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구기준을 가지고 대충 획정을 한다고 하면 한 20개 늘어나는 걸로 추산이 되잖아요. 제 얘기 뜻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뜻은 아닙니다.

○**유인태 위원** 246을 맞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46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권역별 비례안을, 획기적인 안을 내시고 했으니까…… 인구기준이 아까 그렇게 나온 안이 지금의 기준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백육십몇 개 지역구를 상정한 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6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구 246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인구기준선을 제시하는 게 맞았던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 하나는, 선거구 확정 때 자치구하고 행정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구가 선거단위가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현재는 자치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때 부천이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데 부천은 4명 뽑고 수원은 3명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지요. 부천의 무슨 구, 무슨 구, 그것은 자치구가 아닌데 행정구인데, 행정구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더 늘려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래서 지난번 선거구 확정할 때부터 행정구를 적용하지 않고……

○**유인태 위원** 지금은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로 국회의원 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 그렇게 정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유인태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 뽑고 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구’가 아니라 ‘자치시’지요. 가령 부천이 수원보다 인구가 적으면서 더 뽑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래서 지난번부터 행정구의 구를 무시하고 전체 자치시별로 획정을 했습니다.

○**유인태 위원** 글썸, 그게 정상이다, 행정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정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유인태 위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의원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구당 부활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후원회 제도도 하신 것 저는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대수 위원은 떨어져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개특위에 보니까 떨어져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줄 3선 내지는…… 지금까지 떨어지면 누구한테서 후원금을 한 푼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선거보전금 받은 것도 다 정당에……

○**유인태 위원** 생활비로 받아도 안 되고 돈을 아무한테도 받을 수가 없고 부모가 증여를 해 줬다거나 상속세 내고 상속을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제 경우도 얘기했지만, 제가 17대 떨어질 때 재산신고를 하고 4년간 수입이 없었어요. 19대 들어왔을 때 재산이 안 줄었으면 선관위가 저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정치 관련법을……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선을 해 본 사람들, 원외위원장들 모두가 해당되는, 그리고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 조사할 생각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니까 미국 가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책도 쓰고 했는데 그다음에 들어와서 재산 신고한 것 보니까 안 줄었어. 선관위가 그동안에 무슨 비용으로 그렇게 다녔는지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관위가 그럴 권한이 없나?

(웃음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지구당 부활하고 모두가 지키는 법으로, 후원회를 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거다, 지금 있는 이 제도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다, 더군다나 지역위원회 원외위원장들도 대개 지방의원 합동사무소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 다 있는 것은 선관위가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굉장히 불편하고 궁핍하게 낙선하신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인태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시간이 다 됐어요?

○**위원장대리 김태년** 예.

○**유인태 위원** 하던 말이나 마저 마칠게요.

.....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만하시지요.

(웃음소리)

유인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현행 지역구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2 대의 1 기준을 지키려면 인구 상·하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갖고 계시지요?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현재 결정 시에는 상한인구가 27만 7966명이고 그리고 하한인구는 13만 8984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구변동이 약간 있어서 1000명 정도 위아래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246개의 지역구를 유지하는 전제지요? 그 조건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인태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지금 개인 사무실에서 정당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면 위법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렇지요? 현행 정당법 37조인가요? 거기 보면 위배됩니다. 처벌대상이 됩

니다. 벌금 2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그것은 개인 사무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면 그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정당 활동하면 그것은 위법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다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인구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변동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자료 보니까 수도권과 광역시는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전남·북, 경남·북 다 농촌지역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구 11만을 하한선으로 했을 경우에 도시지역에서 71개가 늘어나고 농촌지역에서 17개가 늘어난다고 자료를 냈는데요.

경남·북, 전남·북이 다 농촌지역은 아니지요? 거기도 도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도별 편차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 대표성 문제, 그러니까 군을 4개, 5개씩 한 선거구로 하는 문제였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농촌지역에서 인구 하한 11만으로 했을 때 17개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아니고 경남·북, 전남·북에서도 도시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갖고서 지금…… 그다음 장에도 보면 현행대로 도시지역이 71%, 농촌이 28%인데 인구 상한 11만이나 13만으로 해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 내지 마시고…… 지금 실무진에서 어떻게 작업을 이렇게 해 오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과의 편차를 보자고 한 거잖아요. 지난 회의 때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마 기준을 명확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분류를 도시 그다음

에 농어촌 그러니까 군 단위하고, 시와 군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분류로 도시지역이 몇 개고, 농촌 그러니까 군 단위 선거구가 몇 개고, 도농이 합쳐진 선거구가 몇 개고, 이걸 갖고 인구 하한 11만, 12만, 13만, 14만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내주셔야 참고자료가 정확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명백할 텐데 당연히 11만이든 12만이든 간에 도시지역만 늘어나지 농촌지역이 늘어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위 대표성과 관련해서 의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 지역이 월등히 늘어나고 농촌지역은 20%까지 떨어지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요. 하한선을 밑으로 내리면 도시 지역 선거구가 더 늘어나서 도시가 더 과잉 대표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한선을 끌어올리게 되면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통폐합을 해서 4~5개 구를 합쳐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로는 하한선을 끌어올리든 끌어내리든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지요.

○김기식 위원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한 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그냥 ‘권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대강 하지 말고 그 권역 내에서 시도 단위에 최소 의석수를 두고, 동시에 그 권역 안에서도 농촌에 대한 최소 배정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전남이든 경북이든 그 지역의 인구가 당연히 도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권역별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해도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 출신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 출신은 권역별 비례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결정으로 인해

서 훼손된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 문제를 권역별 비례로 보완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권역 내 시도나 농촌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장치를 설계해 보시고요.

이게 하나의 방안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인구비례로만 권역을 배정하지 말고, 저희가 연방제 국가는 아닙니다만 권역별로 기본 동일하게 배정해 놓고, 남은 동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를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간에 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든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이해는 했는데요, 정확히 반반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기본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건지 하는 것을 적어도 소위에서 결정을 해서 줘야지……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안 2안의 형태든, 아까 얘기했듯이 도농 비율을 정해 주는 것하고, 그 권역 내에서 하여간에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소외되는 도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제도 설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한두 개 마련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시뮬레이션까지 안 되시면 ‘어떤 안들이 이런 우려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의 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기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경선 관련해서요.

지금 누구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모든 정당에게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건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은 모두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정당이 선택하도록 해

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법안도 모든 정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법은 없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정당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냐도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246개 선거구 모두에서 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거냐? 어느 정당의 경우에, 지금 아마 새누리당도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실제로 단수공천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가 경쟁할 사람이 없어서 단수로 경선 없이 그냥 후보자를, 전략공천 아니고도 정해지는 경우가 대개 지난 19대 때 보면 한 3분의 1씩 나옵니다. 이런 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정당이 그냥 1명씩을 선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아까 비용계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340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는 전 지역구에 걸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당에 따라서 선택해서 100군데, 50군데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도, 물론 어떻게 할지 모르긴 합니다마는 대개 평균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든다,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의 선거구 숫자에 따라서 비용계산을 국민들도 할 수 있고 정당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전체 다 했을 때 들어갈 총비용, 그리고 평균적으로 1개의 선거구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당사자인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데, 우리나라의 고령화돼 있는 유권자들 이런 분들에게 편하게 알려 주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데 아주 쉬워야 되는데, 지방동시선거할 때 후보 제

대로 알고 못 찍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다, 또 거기에 급작스럽게 석패율 제도를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저 사람 떨어졌는데 왜 붙었지?’ 이것 전부 또 이해시켜야 되고 아주 난제가 많아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와 석패율 제도는 한쪽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을 좀 극복해 보자 이걸데 그 편중돼 있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경상남도라든지 부산 같은데 아주 제한적이지만 표가 좀 바뀌고 있고 의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지난 보궐선거 때 순천·곡성에서 또 여당 의원이 당선이 됐고, 서서히지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 선거제도가 이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지역감정을 풀고 이쪽에서 저쪽 사람을, 저쪽에서 이쪽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로 이걸 딱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 이것이 석패율 제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떨어진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권역별로 지역구 당선된 의원이 있고, 같은 당에, 또 그 옆에 같이 있다가 떨어졌는데 석패율이 높아져서 당선이 됐어요. 같은 당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해요, 의정활동을. 그때의 그 부작용은 지금 기초의원선거에서 3명 뽑는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1등, 3등 나오고 한 정당이 2등 나오고 해서 2 대 1로 있으면 사이가 2 대 1로 좋아져야 되는데 같은 정당끼리 견제를 해요. 이것이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하고 연관이 되면 국회에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김태년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정당이 당선된다는 것은……

○**김명연 위원** 아니, 그 권역 내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이 다시 붙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지역구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내에서는 석패율에 의해서 당선되더라도 상대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지 같

은 정당에서 당선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연 위원** 그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만둘 겁니까? 지역구에 이미 비례대표로, 전문가로 딱 온 사람은 아예 그걸로 포기를 하지만 자기가 지역구에 임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어딘가에 자기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없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단한 거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도 다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판결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의견을 물어보지요. 그때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걸 방관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구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다음에 투표를 할 때 도시에서는 하도 자주 명함 돌리고 하니까 지겹다고 하는데 4개 군 있는 데, 3개 군 있는 데는 전부 또 고령화가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후보 얼굴도 모르고 SNS 같은 걸로 아무리 선거활동을 해도 이게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러면 그 유권자들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판결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물론 노력은 했었지만 판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관위가 전문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판결이 났을까, 전 정말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선관위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결 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는 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거기에 참여한 저희 간부가 있는데요.

○**김명연 위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초쯤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이 와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일반적인 그동안의 현재 결정들을 소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질문 응답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헌법재판관들한테 드렸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 2~3개 손보는 데도 국회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힘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2 대 1이 됐을 경우에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는 보다 부합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선거구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구구절절 설명했던 내용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이를테면 선거구를 다소, 강원도 화천·양구·철원·인제 이런 선거구는 선거 때 14일 동안 선거하면서 얼굴 한 번 못 보고 SNS로 전달도 안 되고, 어떻게 유권자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할 수가 있나, 거기 한 바퀴 도는 데 일주일 걸려요. 겨울 같은 때는 지역구 관리하려면 아예 얼굴도 못 보는 데입니다. 그분들 민원, 그분들을 위한 의정활동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좀 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담당관이 가서 한 번 하는 거하고……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재판관들한테 이런 파생되는 문제들을 다 어필했으면 이런 판결은 안 났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력 구조에 있어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이걸 당연히 개헌을 통한 해법을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여의치가 않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보

니다. 이것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제시를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개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속사정은 제가 들었고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지역구 246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든 오류를 범했다, 그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영토 규모에서 지역구 246개가 많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감정이 지금 300석도 많다고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역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도 기왕에 방향을 잘 잡고 용감하게 매우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잘못 인식하지 않는 그런 적정 규모의 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공정 선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신 환경을 놓고 보면 여론조사를 할 때 전국 단위의 선거는 휴대전화나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마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구 규모 정도 되면 여론조사를 대부분 KT에 등록된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정 직업군, 예를 들면 매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요즘 집전화 등록 안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은 또 연령이 조금 낮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과 특정 연령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공표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 데, 그런 숙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낸 개정의견 중에서 안심번호제라는 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통신회사들로부터 핸드폰 번호를 받는 것인데 그 번호가 또 건네지는 것이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번호를 넘겨주어서,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가상의 번호를 넘겨주어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게 하고 그 이상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안심번호제가 선관위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구 정도의 규모는 대부분 그것이 집전화거든요, 그것도 KT에 등록된 집전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표됨으로써 유권자의 어떤 투표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니 이 안심번호제를 평상시에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겠느냐, 혹시 그런 것은 연구하신 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 문제를 한번 좀 연구를, 요즘 하도 오류가 많아 가지고 격차도 심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저희 새정치연합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안인데 우리가 지금 재보궐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재보궐 선거를 많이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재보궐 선거의 그 원인을 제공한 당, 이 당은 일정하게 페널티를 맞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페널티를.

그러니까 예컨대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못 내도록 만드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후보를 못 내는 것까지는 좀 지나친 감이 있고요.

○김태년 위원 지나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것은 뭐…… 또 위헌 소지도 나올 수가……

○김태년 위원 위헌 소지가 있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거보다는 국가에서 주는 어떤 보조금을 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페널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혹시 후보를 못 내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한 위헌 여부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일단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거의 위헌일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언론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늘 국회위원 선거의 선거구를 확정하는 선거구확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위원회에서 마련한 확정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약간 확대되어서 기사가 나온 듯해서 좀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야 간사, 위원장 간에 국회의원 선거구확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구

에서 해 온 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받느냐, 가부를 표결을 하느냐 기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 녹여 내려서 4월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입법과정을 끝낸 다라는 부분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확대해석이 된 것 같다……

○**김태년 위원** 뭐가 확대해석이라고요?

○**정문헌 위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김태년 위원** 그 합의가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정문헌 위원** 아니, 여기 그러니까 뭐를 포함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할 것인지, 아까 그 가부를 표결하는 것을 본회의로 보낼 것인지 이쪽으로 보낼 것인지 뭐……

○**김태년 위원** 그 합의는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언론 보도에.

○**정문헌 위원** 아니, 그런 기타 등등이 없으니까 이 뒤의 부분이……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지 않는다, 의결권한은 당연히 갖는 것이고 수정권한을 갖지 않는다……

○**정문헌 위원** 수정권한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해서 다시 해 오라고 그랬을 때도 그것을 수정권한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은 하여튼 4월에 우리가,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너무 확대되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병석** 자, 그러면……

○**정문헌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오해가 있을까 봐……

○**위원장 이병석**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양당 간사와 논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논의한 내용의 핵심은 4월 29일 날 소위가 열리면 그 소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를 일단 정치개혁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4월 29일 소위에 하여튼 집중해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도가 나간 것처럼 따라서 국

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의 독립기구에서 결론이 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정개특위에 와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 없이 의결만 해서 국회 본회의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날 소위에서 여야 간에 그 결론을 충분히 내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김태년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요?

○**김태년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예.

○**김태년 위원** 이 합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러니까 선관위에다 둘 것이냐,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합의의 핵심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손대지 않겠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을 더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위원장 이병석** 그런 논의가 4월 29일 날 최종 확정되는 내용이니까……

○**김태년 위원** 시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한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통과한다, 여기까지가 합의인 것이지요.

○**위원장 이병석** 그러니까 4월 29일 날 그런 논의까지 포함해서 여야 간에 소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국회 본회의에 반드시 가능하면 처리되도록 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매우 너무 디테일하게 보도가 되니까 그 4월 29일 날 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가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보도가 약간 앞서가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지요?

○**정문헌 위원** 예, 보도가 너무 확대해석된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상희 위원** '포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그러니까 수정권한을……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수정권한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부분도 있고 그런저런 논의할 부분이 남았는데 너무 다 결정 난 식으로 확대해석을 시키게끔 기사가 나간 부분이 있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병석 그것은 그렇게 큰 뜻은 아니까 됐어요.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석 큰 흐름에 대한 얘기는 됐는데……

○정문헌 위원 그 범위에 대한 얘기는 이거 끝나고 다시 하시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위원장 이병석 내가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야 간사 두 분이 얘기한 것이 정개특위의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정개특위 위원 전체의 의견이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협의한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것처럼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헌 위원이 조금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4월 29일 날 소위를 거쳐서 의논이 나와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은 정개특위에서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요?

○정문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러니까 큰 흐름에 대한 얘기는, 이를테면 정개특위 밖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두 분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수정권한도 포기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그것은 그때 4월……

○정문헌 위원 큰 흐름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있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회의에서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병석 자, 하세요.

○김태년 위원 저는 보도를 못 봤는데 지금 보도를 봤는데……

○위원장 이병석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태년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특위에서 의

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주재하에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합의의 핵심이 뭐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 합의의 정신은 뭐냐 하면 지금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예전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해 가지고 오면 정개특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손을 대 가지고 심지어 게리멘더링까지 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안을 존중하자, 다만 이것은 입법권한이니까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저의 그런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버리면 마치 우리가 그런 합의를 안한 것처럼 또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바로잡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얘기의 큰 흐름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특위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단 두 분과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앞질러서 결정되는 것은 아직 이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니까 다른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것을 조금 조정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정문헌 위원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 이병석 그러니까 두 분 간사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발표하는 부분은 아직 절차를 거치고 특위 위원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다 정돈되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을 너무 빨리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좀 기다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오해하실까 봐서요. 이 합의에 대하여 제가 무슨 보도자료를 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석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김태년 위원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정문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기자실에서 보고 있다가 아마 그 보도를 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석** 됐습니다. 큰 취지는 됐으니까……

○**정문헌 위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알았고 어떻게 회의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도 여야 간에 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자, 질의하십시오.

○**정문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연령 하향과 관련되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이고 7급공무원 응시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과 현행 선거법의 연령이 동일한데 OECD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년의 연령과 선거권 연령이 다르니까, 대부분 동일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마도 추정컨대는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은 민사상의 행위에 대해서 성년을 규정을 한 것일 거고 선거권이라고 한다면 공법상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정한 것인데 그 양자를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문헌 위원** 글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선거권·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별개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우리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성년과 선거권 문제가 같이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 OECD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 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면 고등학생인데 성인으로 받아들여서 부모 동의 없이, 아까 민법상 문제 말씀

하신 것처럼 매매계약·전세권 행사 가능하게 할 것인지, 청소년 보호법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19급 19급' 하는 그런 성인들이 이것 뭐 앞으로 '18급'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에 대한 검토안 합의를 다 함께 한 다음에 선거법상의 선거 연령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도 7월 25일에 현재 결정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 말씀이시지요?

모든 답변을 다 그리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조4항의 취지가 우리 총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 8조4항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그런 조항을 갖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정신을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헌법이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문헌 위원** 자율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해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정문헌 위원** 그렇게 볼 때,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속 구성원들의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지금 명확한 규정 여부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 역시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문헌 위원** 헌법정신에, 헌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구성원들의 피선거권이 상실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다 그냥 우리가 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입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저는 그것을 보는 시각이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의사결정과 단체의 의사결정 또 단체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철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문헌 위원** 그러면 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형식으로 정당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현행법하에서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놔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래서 입법적으로……

○**정문헌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어떤 판단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최소, 정당의 핵심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문헌 위원** 피선거권을 일단 규제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것도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정강에 관련돼서요? 그 구성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구성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좀……

○**정문헌 위원** 핵심 구성원들이 같은 정강정책을 갖고 다른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위당이 같진 않겠지요. 내용이 같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강정책이 같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 기능이 있고 또 거의 유사하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또다시 위헌 제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정문헌 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의사진행발언?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조금 전에 김태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일보 보도 내용,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특위 전에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정문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외부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데까지 야당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특위에서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소위 위원들 간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고 분명히 전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인데 여러 번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서 정문헌 간사와 합의했던 내용의 핵심 사항은 수정권한 포기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정권한 여부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합의하지 않겠다, 합의하겠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보도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다음 특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정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또 양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 정개특위 밖 독립기관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디테일하게 그걸 어느 독립기관에 둘 것이냐 또 수정권한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소위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양당 간사가 크게 합의한 틀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되는데, 아까 김태년 위원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보도 내용에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소위가 아직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다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소 약간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또 소위에 임명된 다른 소위 위원들이 보면 그건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좀 기다릴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전체 얘기의 큰 흐름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론한다고 해서 결론이 된 겁니까? 거쳐야지요. 그 뜻이니까……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병석** 아니, 그런데……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이병석** 그래요. 한번 하세요.

○**김태년 위원** 이게 방송 중계도 되고 있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버리면 제가 반칙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제가 전혀 반칙한 게 없어요.

○**정문헌 위원** 없어요.

○**김태년 위원** 합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의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선거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손대지 않겠다, 이게 합의의 핵심이니까요. 그걸 합의한 거라니까요, 그걸.

○**위원장 이병석** 그렇다고 해서 수정권한을……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 잠깐만요.

수정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손을 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석** 아니, 그거는 요지를……

○**김태년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끝내고요.

그러니까 그 수정권한을 갖겠다라고 해버리면요, 그걸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합

의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수정권한을 갖지 않겠다, 이게 분명한 거고요. 디테일한 것,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의결했다, 우리 특위에서 의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어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가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말씀……

○**위원장 이병석**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장 이병석**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위원장님도 그래서 그렇게 이번 4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합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문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서로.

○**위원장 이병석** 자, 그러면 정문헌 위원……

○**정문헌 위원** 우리 김태년 간사님 반칙하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발언하신 중간에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했다는 데 합의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게 ‘기득권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득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언론에서 봤을 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게리맨더링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됐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 같은데,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데에는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안에 담긴 정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리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소위가 아직 한 번도 가동도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정권한이라는 게 뭐냐 갖고도 또 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어디까지가 수정권한이냐는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너무 멀리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자, 그래요. 됐어요. 정문헌 위원님……

○김상희 위원 너무 지나치게……

○위원장 이병석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하여튼 전체 큰 틀에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데 대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소위 구성이 된 거기에서 본격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정을 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깐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걸 논의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별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7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안건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향후 우리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법 제58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해서 병합심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등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경대수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범계	박영선
백재현	신정훈	심상정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
법제과장	장재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5. 4. 2 이학영·이개호·원혜영·김광진·도종환·신정훈·남인순·문재인·박영선·강동원 의원 발의)  
 4월 3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9. 14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로부터 임수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1.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오미예 외 9만 5745인으로부터 장하나 의원 외 56인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1.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34 대웅빌딩 203호 청년유니온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한지혜 외 5만 1077인으로부터 진선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1 부산 북구 금곡동 95-11, 101호



정진우 외 8인으로부터 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7건 2015년 4월 6일 회부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015. 4. 7 경기 하남시 감2동 316-18 최병모 외  
68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7일 회부됨